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설명회

2020. 01. 07.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지침설명회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2:30~13:00	30분	- 등록	참석자 확인 및 설명자료 배부
13:00~13:05	5분	- 인사말씀 및 일정 설명	식품안전정책과
13:05~13:15	10분	- '20년 업무계획 및 정책방향 공유	식품안전정책과
13:15~13:25	10분	-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식품안전정책과
13:25~13:50	25분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방법 설명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13:50~14:10	20분	- 식품관련업체 관리(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품안전관리과
14:10~14:25	15분	- HACCP 제도 운영	식품안전표시인증과
14:25~14:35	10분	- 식품 표시 법령 체계 설명	식품표시광고정책과
14:35~15:00	25분	-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중독예방과
15:00~15:20	20분	휴 식 시 간	
15:20~15:30	10분	-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수입식품정책과, 수입유통안전과
15:30~15:40	10분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정책과
15:40~16:00	20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16:00~16:30	30분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농축수산물안전과
16:30~17:00	30분	- 총괄 질의 응답	

Contents

1 '20년 업무계획 및 정책방향 설명

3 통합식품정보망 사용방법 설명

5 HACCP 제도 운영

7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9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1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2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4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6 식품 표시 법령 체계 설명

8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1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년 업무계획 및 정책방향

식품안전정책과 박동희 사무관

목 차

추진 과제

- I 식품안전 관리체계 혁신
- II 민감계층 먹거리 안심 확보
- III 혁신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확대
- IV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식품안전





안전한 식품 제조 · 유통 기반 조성

<식품위생법령 주요 개정 내용 등>

식품안전정책과 박규나 사무관

'19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행정처분 관련 사항

법 조항	개정일 (시행일)	개정내용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19.4.30. ('19.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19.5.21.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이 위반행위 원인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2조제3항에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경규정(I.15.차.) 삭제 * 법률 제15943호('18.12.11. 공포, '19.6.12. 시행)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19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행정절차 관련 사항

법 조항	개정일 (시행일)	개정내용
시행규칙 제20조의2	'19.6.12.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사 요청 절차(기준·규격 부적합 통보 60일 이내 재검사 신청서 제출) - 재검사 방법(검사결과 판정 후 남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단 남은 제품이 부족한 경우 제조일이 동일한 동일롯데 제품으로 수행) - 재검사 수행기관(시도 보환연 및 시험·검사기관→지방청 / 지방청→평가원) -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재검사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법률 제15943호('18.12.11. 공포, '19.6.12. 시행)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19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행정절차 관련 사항

법 조항	개정일 (시행일)	개정내용
법 제37조	'19.4.30. (19.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제재처분기간 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시행규칙 제40조 ~제43조	'19.11.20. (19.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허가 등 신고 시 영업자가 제출하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함

'19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관련 사항

법 조항	개정일 (시행일)	개정내용
법 제46조	'19.1.15. ('19.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배달앱)가 소비자로부터 조리한 식품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19.4.19. ('19.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장소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같이 할 경우 분리뿐 아니라 구분, 구획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 개선 * (개정 전) 동일 장소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시 '분리'하도록 함 → (개정 후) 구분, 구획도 가능하도록 함 동일 제과점 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가 5km 이내인 다른 관할구역의 영업소 조리장도 공동으로 사용 가능

'19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관련 사항

법 조항	개정일 (시행일)	개정내용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9.4.19. (19.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재사용 불가 범위 명확화 * (개정 전)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 (개정 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 먹을 수 있게 진열, 제공한 음식물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7]	'19.6.12. (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 등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
법 제41조	'19.12.3. (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 - 다만,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9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기타 사항

법 조항	개정일 (시행일)	개정내용
법 제43조 영 제28조	'19.1.15. ('19.7.16.)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시행규칙 제31조의3	'19.11.20. ('19.12.12.)	◦ 식품위생감시원이 받아야 하는 직무관련 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등 규정 - (교육시간) 신규 21시간 이상, 기존 매년 7시간 이상 - (교육내용) 식품안전 법령,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감시원 직무 등 * 대통령령 제29368호('18.12.11. 개정, '19.12.12.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유권해석



FAQ

- 식품접객업자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 행정처분 유예 가능한가요? **YES**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므로, 검찰수사 종결이나 법원판결까지 행정처분 유예 가능
-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장소에서 2회 이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NO**
 - 동일 장소에서 2회 이상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한시적 영업 1회 운영기간이 1개월 이내로 운영되었다면, 영업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차 영업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단, 계속하여 영업을 할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한시적 영업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함
-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NO**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경우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단,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식품 조리, 운반 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함



III

통합식품정보망 사용방법 설명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김은경 주무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란



행정체계 단절로 인한 정보관리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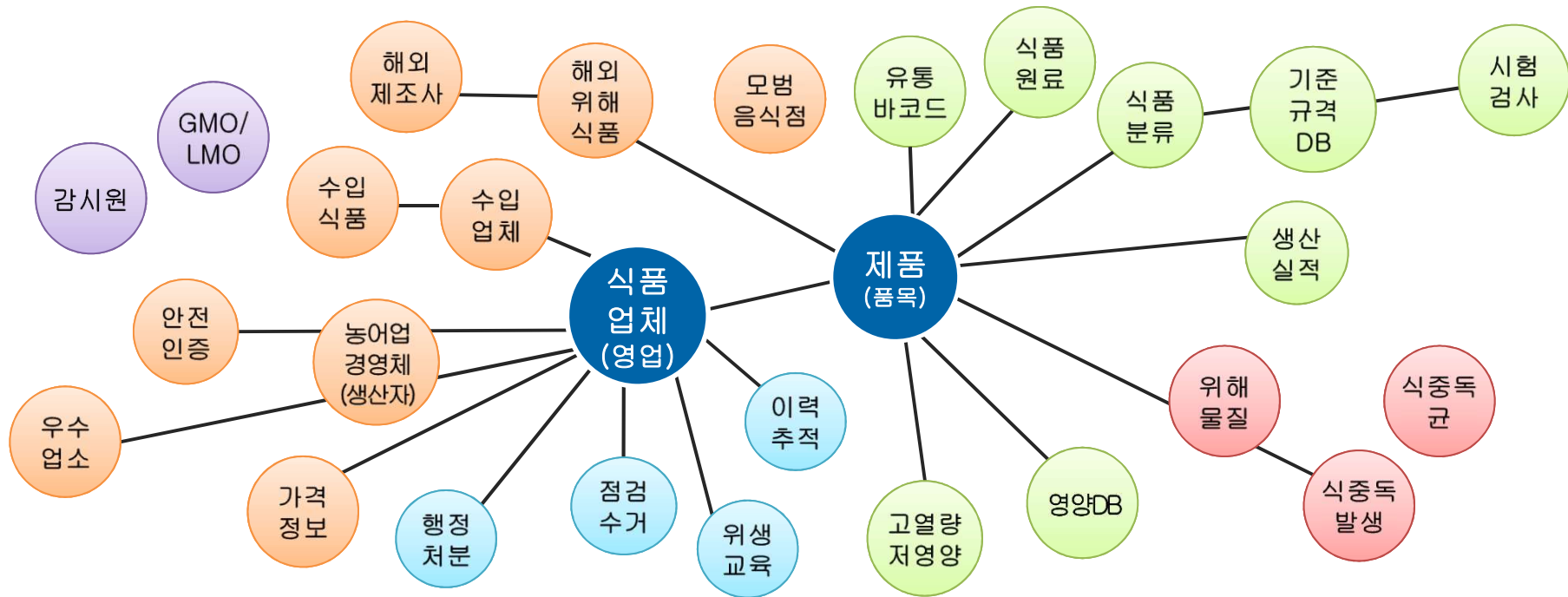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공동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보서비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연결정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보를 서로 연결합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 구성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정보활용시스템



식품안전나라



행정망

식약처, 지자체

실시간 협업 안전행정

관계기관, 지자체

정보 연계 제공 및 조회

인터넷망

국민, 산업체

식품안전정보, 전자민원,
정보개방(OpenAPI)

통합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약처, 시도 시군구 공무원이 식품안전관리업무에 활용하는 행정 시스템

*식약처·지자체의 수집 정보를 통합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영업 인허가 정보 등)



시도17개, 시군구226개

최초로 전국단위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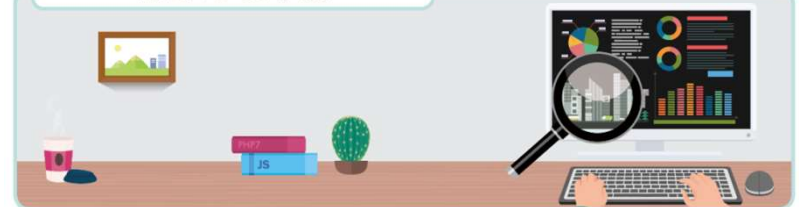


- 134만건 식품 등 업체인허가
- 215만건 식품 등 품목신·보고
- 1,000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 16,000건 HACCP업체관리

실시간 지도점검·수거검사 검색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정책통계 제공



통합망-정보활용시스템

12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정보 통합 연계 제공

범부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



식품안전통합DB

-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환경부
-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범부처 식품안전 관리업무 효율성 증대



부처에 산재한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식품정책수립에 활용



12개 부처 214종의 정보연계로 공동활용체계 구축



통합망-식품안전나라

국민과 산업체에 식품안전정보를 확대 개방·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사이트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민원서비스 통합 창구

데이터활용서비스



공공데이터 제공

품목제조보고 등(109종) 온라인 민원 기능 확대



생활밀착형 식품안전정보 제공



공공정보 개방으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업무별 사용 시스템

주요업무	식품위생	축산위생
지도점검, 수거검사	서울위생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행정처분		시도,서울축산시스템
식중독예방관리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식품허위과대광고 축산물냉동전환신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부정불량식품신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보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모바일 현장행정	시도(식약처 앱, 모바일웹) 시군구(서울위생앱)	해당없음

0 업무별로 반드시 해당하는 시스템을 사용

통합사후관리

●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버튼 클릭

시스템관리 | 품질관리 | 위기관리 | 권한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미결/진행 - 완료 - 반려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 행정 통합 시스템

수입식품 · 통합게시판 · 위생용품 · 마이페이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업무 처리 **[식약처]**

- 인허가 접수·처리
- HACCP·GMP관리
- 위해정보관리
- 위해조사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 일반관리행정

행정업무 처리 **[공통]**

- 1399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 식중독 예방관리
- 보고관리, 유권해석
- 축산물 HACCP·냉동전환
-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 수입식품 조회
- 품목조회
- 기준정보 조회

통합사후관리 - 단속대상 선별 계획관리

- ① 업체선별계획란 확인 및 인허가관할기관 선택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③ 선별업체목록 확인, 선별업체목록에 ④ 점검대상 업체추가를 하거나 ⑤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업체를 삭제 한 후 ⑥ 선별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 선별 완료

통합사후관리

단속대상 업체선별 담당자검토

단속대상 업체선별 결과검토

1. 업체선별계획: 합동단속 계획

2. 인허가관할기관: [검색] [X]

3. [조회] [조회조건 초기화]

4. [점검대상 업체추가]

5. [삭제]

6. [선별확정]

+ 선별업체목록

10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순번	<input type="checkbox"/>	선별구분	업종	인허가번호	부처 시도	관할기관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단속필요성점수
1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00612300	경상남도	거제시		신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063(1동...	99.638
2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20528012	전라남도	강성군	법인 정당은주...	전	전라남도 강성군 북하면 약수리 525-6	97.835
3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40617173	경상남도	함안군	마을영농조합법...	함	경상남도 함안군 강주4길 67-19	98.817
4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00094754	서울특별시	관악구	푸드(CSC푸드)	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1길 5-4(...	95.647
5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10444056	충청북도	괴산군	법인 괴산갑곡...	경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경로 111	96.435
6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70073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 주식회사	박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로6길 24(...	97.154
7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302407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브라운니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99.785
8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080521045	전라남도	강술군	새름	박	전라남도 강술군 북교반산로 137	99.056
9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70441005	충청북도	영동군	법인 확산아로...	김	충청북도 영동군 확산면 서산로 66	98.434
10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090526078	전라남도	함평군		김	전라남도 함평군 산내길 55-33	95.260
11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000255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동면 상동로 14...	97.012
12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50205425	인천광역시	계양구	틀론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72번길...	96.748
13	<input type="checkbox"/>	단속필요성...	식품제조가공업	20140523010	전라남도	해남군		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응달길 117	99.820

통합사후관리 - 지도점검관리

- 지도점검관리 > 지도점검 실적등록 및 조회관리 화면에 접속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조회 목록에서 업소명을 두 번 클릭하면 ④ 지도점검 실적 관리 팝업창이 뜨고 세부 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

통합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적등록 및 조회관리

지도점검 실적등록 및 조회관리

3961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최대 100,000건)

순번	수행기관	합동단속기관	업소
1	서울특별시		미소정육점
2	서울특별시		착한정육점
3	서울특별시		축산물공판장
4	서울특별시		대상축산
5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나하강
6	서울특별시		(주)아이유푸드
7	서울특별시		(주)아이유푸드
8	서울특별시		(주)하림(서울축산물센터)

통합사후관리 - 수거검사관리

- 수거검사관리 > 수거검사 실적등록 및 조회관리 메뉴 접속, ①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 ② 조회 버튼 클릭하여 ③ 수거검사 실적정보 조회

* 조회 목록에서 행을 두 번 클릭 하면 실적관리 세부창이 활성화 되어 해당 화면에 실적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

1 검색조건 설정

2 조회 버튼 및 기간별 조건으로 조회 가능

3 실적관리 세부창 열기

다양한 기간별 조건으로 조회 가능

순번	검사권행	수행부서	수거계획명	수거목적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수거장소	수거세부장소	제조/수입/판매원 업체명	제조/수입/판매
1	완료(전합)	서울청 식품안전관...	위해정보 등에 따...	수입식품	데크레이션 501(DE...		당해업소	추식회사 티하스	(주)티하스	수입식품등 수입
2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3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4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5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6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7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8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9	의뢰인합	부산청 식품안전관...	2018년 영양표시...	2018-04-05	영양표시...					

통합사후관리 - 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

-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조회 메뉴 접속 후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하여 부적합통보내역 ② 조회
 조회된 긴급통보내역 ③ 행 클릭 시 하단에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상세내용 확인 가능
 * 두 번 클릭 시 팝업창을 통해 ④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등록 정보 확인 및 ⑤ 출력 가능

부적합식품 긴급통보내역 조회

①

회수원인: 전체 | 식품분류: 전체
 업종명: | 유통매이지공개: 전체
 제품명: | 회수폐기공개: 전체
 관할기관: | 보고기관: |
 업소명: | 검수상태: 전체
 부적합보고일: 2018-04-06 ~ 2018-04-06 | 시험항목명: |
 식품유형: | 회수결과보고일: |
 신고번호: | 회수공개: 전체
 공개종류: 공개종료일(현재일시기준) | 회수공개: 전체

②

+ 부적합식품 긴급통보내역
 12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③

순번	검수상태	검사구분	보고기관	부적합공개여부	부적합공개일시	회수공개여부	회수공개일시	회수결과공개여부	회수결과공개일시	공유	식품분류
1	<input type="checkbox"/>	긴급통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해)한국분석기술연구원							2. 가공식품
2	<input type="checkbox"/>	긴급통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해)한국분석기술연구원							
3	<input type="checkbox"/>	긴급통보	위탁검사부적합(민...)	동명생명과학원(주)							
4	<input type="checkbox"/>	긴급통보	경부수거 부적합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5	<input type="checkbox"/>	긴급통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한국식품시험검사원협회							
6	<input type="checkbox"/>	긴급통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주대학교생명과학기술학...							
7	<input type="checkbox"/>	긴급통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							

④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등록

⑤

출력

통합사후관리 – 통관보류 해외직구 식품정보 등록

- ① 조회정보를 입력한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 ③ 통관보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 확인

통합사후관리

운영자 MY MENU LOGOUT

- 단속대상 선별계획 관리
- 지도점검관리
- 수거검사 선별계획 관리
- 수거검사관리
- 행정처분관리
- 부적합건금통보/회수폐기
- 축산물 위탁검사
- 양식장 안전관리
- 수산물 위생정보
- 안전성조사 실적 정보
- 문제영업자 추적관리
- 통관보류 해외직구 식품정보 등록
- ▶ 해외직구식품 검사결과
- ▶ 소비자 참여 검사 결과
- ▶ 위해식품자단목록
- ▶ 통관보류 해외직구 식품정보(등록진)
- ▶ 통관보류 해외직구 식품정보 등록
- ▶ 통관보류 확정정보

Page ID : S-ADM-04-75-010

통관보류 해외직구 식품정보 등록

①

▶ 요청일자: 2018-03-24 ~ 2018-04-24

▶ 제조국가명: -선택-

▶ 요청번호:

▶ 통관보류요청사유: -선택-

▶ 제품명:

▶ 관련근거:

▶ 제조사명:

▶ 차단용 제품용 키워드:

② 조회

38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요청번호	제품명	제조사명	차단용제품명키워드	제조국가명	통관보류 요청사유	관련근거	요청일자
1	2094	dim-plus	nature's way	dim	캐나다	기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2	2093	shadow-x lemon zero	natural alterna...	shadow	미국	기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3	2092	max spark	aspen biolabs	max, spark	미국	기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4	2091	trim-maxx herbal diete...	body breakthr...	trim-maxx, herbal, dieter's tea	미국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5	2090	skinny gal	rockstar llc	skinny	미국	기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6	2089	troxyphen	truderma llc	troxyphen	미국	기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7	2088	lineaslim metabolism a...	apax usa	lineaslim metabolism	미국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8	2087	bioxygenic power finish	md science lab	bioxygenic	미국	기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관세법 제237조	20180420
9	2041	diva fat burner	hit supplements	diva, fat, burner	미국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405
10	2026	gluta lipo 12-in-1 whit...	-	lipo, slimming	없음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330
11	2025	戰馬藥錠	-	戰馬藥錠	없음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330
12	2024	一片挺瘦藥錠	-	一片挺瘦藥錠	없음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330
13	2023	美妙瘦純減肥膠囊	-	美妙瘦純減肥膠囊	없음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330
14	2022	麗瘦®茯苓膠囊	-	麗瘦®茯苓膠囊	없음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	관세법 제237조	20180330

1399 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 행정업무 처리[공통] > 1399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클릭

시스템관리 | 품질관리 | 위기관리 | 권한신청 | 로그아웃

운영자

미결/진행 0 완료 24 반려 0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 행정통합시스템

수입식품 · 통합게시판 · 위생용품 · 마이페이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업무 처리 **[식약처]**

- 인허가 접수·처리
- HACCP·GMP관리
- 위해정보관리
- 위해조사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 일반관리행정

행정업무 처리 **[공통]**

- 1399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 식중독 예방관리
- 보고관리, 유권해석
- 축산물 HACCP·냉동전환
-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 수입식품 조회
- 품목조회
- 기준정보 조회

1399신고센터,광고모니터링 - 광고모니터링

- ①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 ② 조회 버튼 클릭,
- ③ 조회된 목록에서 행 두 번 클릭 시
- ④ 상세 내용 확인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1399 신고센터' (1399 Reporting Center) interface for '광고모니터링' (Advertisement Monitoring). The left sidebar contains a menu with '조치대상목록' (Target List) highlighted. The main area displays a search form for '조치대상목록' with fields for '보고일자' (Report Date), '보고번호' (Report Number), '제품분류' (Product Category), and '업체명' (Company Name).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of search results with columns for '보고번호' (Report Number), '보고일자' (Report Date), '진행상태' (Progress Status), '광고매체' (Advertisement Medium), '업체유형' (Company Type), '제품분류' (Product Category), '제품명' (Product Name), '항목수' (Number of Items), and '업체명' (Company Name). A specific row is highlighted, and a detailed view window is shown for that row, displaying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정보 등록'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Monitoring Information Registration) details.

모니터링 지정
이력 확인
가능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관리

●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 버튼 클릭

시스템관리 | 품질관리 | 위기관리 | 권한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미결/진행 - 완료 - 반려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 행정 통합 시스템

수입식품 · 통합게시판 · 위생용품 · 마이페이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업무 처리 **[식약처]**

- 인허가 접수·처리
- HACCP·GMP관리
- 위해정보관리
- 위해조사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 일반관리행정

행정업무 처리 **[공통]**

- 1399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 식중독 예방관리
- 보고관리, 유권해석
- 축산물 HACCP·냉동전환
-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 수입식품 조회
- 품목조회
- 기준정보 조회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관리 -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보고 승인 순서도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관리 - 생산실적보고

④ 조회된 내역 선택 후 ⑤ 미승인 내역 더블클릭하여 ⑥ 상세 내용 검토

생산실적보고 관리 및 승인

관할기관: 서울청 | 실적보고년도: 2016년도

업체명: | 조회범위: 인허가일자

분류: -전체- | 업종: 전체

업체보고여부: 전체 제출 미제출

업체상태: 정상 휴폐업

1 생산실적 보고

업체명(상호): 농업회사법인정선명주 주식회사 | 대표자명: 한사훈 | 보고년도: 2016년도 생산실적

지역구분: 강원도 | 장선군 | 영업장주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2-1(송석길 146-7)

법인번호: 144911-0006361 | 업종: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영업장연락처: 033-563-5603

사업자번호: 225-81-17531 | 관할기관: 서울청 | 인허가번호: 20090015056

보고자명: 홍동희 | 남성 | 보고자연락처: 010-9186-2930 | 팩스번호: 033-563-5604

사무직: 1명 | 기술직: 0명 | 노무직: 3명 | 기타: 1명 | 합계: 5명

※ 생산실적은 품목별로 보고해야하며, 품목보고번호(12자-16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 생산액(제조원가)/생산량 값이 1,000(1백만원) 초과하면 해당 값이 붉은색 글씨로 표시됩니다.
 ※ 해외판매액은 판매금액 계산시 1\$(달러) 당 1,000원 적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품목보고번호	제품명	품목보고대상 품목유형명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명	생산량	생산중단일	생산단위	연간생산능력 (kg, 2)	생량 (kg)
1	200900150561	양락 오가자	과실주	C0127050000000	과실주	Q	N	KG	270000	
2	200900150563	업주왕양 막걸리(일본)	탁주	C0127010000000	탁주	Q	N	KG	0	
3	200900150566	정선명주 생막걸리 근	탁주	C0127010000000	탁주	Q	N	KG	1200000	34
4	200900150567	정선명주 생막걸리 근	탁주	C0127010000000	탁주	Q	N	KG	0	
5	2009001505610	정선명주 생막걸리 며밀	탁주	C0127010000000	탁주	Q	N	KG	1200000	2
6	200900150562	정선명주 생막걸리 오	과실주	C0127050000000	과실주	Q	N	KG	0	
7	200900150565	정선명주 한미생막걸리	탁주	C0127010000000	탁주	Q	N	KG	0	
8	200900150569	정선명주 한미생막걸리	탁주	C0127010000000	탁주	Q	N	KG	0	
9	200900150568	정선명주 한미생막걸리	탁주	C0127010000000	탁주	Q	N	KG	0	
10	200900150564	최고야 막걸리(일본수)	약주	C0127020000000	약주	Q	N	KG	0	

5 생산실적 보고(업체별)

보고대상 업체정보

업체명(상호)	농업회사법인정선명주 주식회사	대표자명	한사훈	관할기관	서울청
영업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2-1(송석길 146-7)	인허가일자	2013-07-01		

생산실적 보고 내역

순번	보고년도	업체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종업원수(명)					종목수	제출 여부	관할기관 승인여부	관할기관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타	합계				
1	2017	농업회사법인정선명주...	144911-00063...	225-81-17531	1	0	3	1	5	10	Y	Y	서울청
2	2016	농업회사법인정선명주...	144911-00063...	225-81-17531	1	0	3	1	5	10	Y	N	서울청
3	2015	농업회사법인정선명주...	144911-00063...	225-81-17531	2	0	2	1	5	10	Y	Y	서울청
4	2014	농업회사법인정선명주...	144911-00063...	225-81-17531	2	0	3	0	5	7	Y	Y	서울청

4

순번	보고년도	제출	승인	보고품목	보고자명	보고자 연락처	관할기관	업체명	인허가번호	업종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영업대장의 연락처	등록일
1	2016	Y	N	10	홍동희	010-9186-2930	서울청	농업회사법인정선명주 주...	20090015056	식품제조가공업(주류)	한사훈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		2013-0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관리 - 위생교육관리

- ① 위생교육관리 > 식품위생교육실적 조회 메뉴 접속 후 ② 화면의 조회조건 입력하여 교육실적 조회, ③ 하단 교육실적대장 목록에서 데이터 확인

1 식품위생교육실적 조회

2 식품위생교육실적 조회

9709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순번	교육유형	교육구분	교육대상	수료자명	생년월일	수료일자	수료증번호	교육방식	비고사항	인허가번호
1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위생책임자	[REDACTED]	194...	2018-04-17	180417-50...	온라인	대표...	20040364370
2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대표자(영업주)	[REDACTED]	197...	2018-04-17	180417-50...	온라인	[REDACTED]	20090320673
3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대표자(영업주)	[REDACTED]	196...	2018-04-16	180416-50...	온라인	[REDACTED]	20150495041
4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위생책임자	[REDACTED]	197...	2018-04-16	180416-50...	온라인	대표...	20170366538
5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대표자(영업주)	[REDACTED]	194...	2018-04-16	180416-50...	온라인	[REDACTED]	20040030452
6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위생책임자	[REDACTED]	198...	2018-04-16	180416-50...	온라인	대표...	20060294196
7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대표자(영업주)	[REDACTED]	195...	2018-04-16	180416-50...	온라인	[REDACTED]	20170134663
8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대표자(영업주)	[REDACTED]	197...	2018-04-16	180416-50...	온라인	[REDACTED]	20100134216
9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위생책임자	[REDACTED]	197...	2018-04-16	180416-50...	온라인	대표...	20180564139
10	건강기능식품위생...	보수교육(정기교육)	대표자(영업주)	[REDACTED]	196...	2018-04-16	180416-50...	온라인	[REDACTED]	20130063384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관리 - 위생교육관리

- ① 위생교육관리 > 위생교육실적 집계표 메뉴 접속
- ②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하여 ③ 하단 업체별 교육실적 목록에서 데이터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위생교육실적 집계표' (Food Safety Education Performance Summary) page. The sidebar menu on the left has '위생교육관리' (Food Safety Education Management) selected, with '위생교육실적 집계표' (Food Safety Education Performance Summary) highlighted in red and labeled with a '1'. The search filter section at the top right of the main content area is highlighted in red and labeled with a '2', showing search criteria for '수료일자' (Completion Date) from 2018-01-01 to 2018-04-17 and '교육유형' (Education Type) set to '-전체-' (All). Below the search filter, a message indicates '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0 items were searched). The data table below is highlighted in red and labeled with a '3', showing a list of education records with columns for '순번' (No.), '교육유형' (Education Type), '교육기관명' (Institution Name), '계' (Total), '신규' (New), '량정처분' (Quantity Disposition), '지위승계' (Succession), '보수교육' (Re-education), 'HACCP신규' (HACCP New), 'HACCP정기' (HACCP Regular), '농업인과정' (Farmer Course), '명명사' (Naming), '조리사' (Cooking), and '기타' (Other).

순번	교육유형	교육기관명	계	신규	량정처분	지위승계	보수교육	HACCP신규	HACCP정기	농업인과정	명명사	조리사	기타
1	식품위생교육	(사)대한제과협회	1,035	678	0	0	357	0	0	0	0	0	0
2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	1,550	334	0	12	1,204	0	0	0	0	0	0
3		(사)한국떡류식품가공업...	1,204	41	0	26	1,137	0	0	0	0	0	0
4		(사)한국식품유지기술가...	3,614	52	0	0	3,562	0	0	0	0	0	0
5		(사)한국의식업중앙회	2,501	2,501	0	0	0	0	0	0	0	0	0
6		(사)한국유통음식업중앙...	4,540	193	0	804	3,543	0	0	0	0	0	0
7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	2,660	131	0	15	2,514	0	0	0	0	0	0
8		(사)한국유통음식업중앙...	7,494	7,015	0	0	479	0	0	0	0	0	0
9		한국식품산업협회	10,155	8,641	0	0	1,514	0	0	0	0	0	0
10		(사)한국의식산업협회	4,653	4,432	0	0	221	0	0	0	0	0	0
11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	16	0	0	0	16	0	0	0	0	0	0
12	축산물위생교육	농협경제지구 축산물위...	8,018	541	14	0	7,463	0	0	0	0	0	0
13		축산기업중앙회	6,890	1,249	73	0	5,568	0	0	0	0	0	0
14	건강기능식품위생...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	6,172	5,753	0	0	419	0	0	0	0	0	0
15	식품HACCP교육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62	0	0	0	0	239	23	0	0	0	0
16		㈜에프디엑스	87	0	0	0	8	78	1	0	0	0	0

축산물 냉동전환(수입) 변경 처리

- 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축산물 HACCP, 냉동전환 메뉴 접속 후
- ② 수입냉동전환신고 >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변경 처리 클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 행정통합시스템

시스템 소통창 · 정보제공·공유 · 마이페이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안전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오
환영합니다.

축산물HACCP 냉동전환

식품안전정보

수입냉동전환신고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변경 처리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대장관리

국내냉동전환신고

축산물HACCP평가관리

행정업무 처리 [식약처]

인허가 접수·처리 HACCP·GMP관리 위해정보관리

위해조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일반관리행정

행정업무 처리 [공통]

1399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식중독 예방관리

보고관리, 유권해석 축산물 HACCP 냉동전환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

식품안전정보 [조희]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품목조회 기준정보 조회

축산물 냉동전환(수입) 변경

③ 품목내역, 변경항목 탭 등에서 변경사항을 확인

축산물HACCP냉동전환

운영자 MY MENU LOGOUT

수입냉동전환신고

▶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처리

▶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변경 처리

▶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대량관리

국내냉동전환신고

축산물HACCP평가관리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변경 처리

수입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변경 처리 Page ID : S-ADM-03-03-711

▶ 접수일자: 2018-01-01 ~ 2018-04-12

▶ 접수번호:

▶ 신청인:

▶ 업체명:

▶ 진행상태: -전체-

▶ 담당자: 본인

▶ 민원신청리스트

8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보안 지연접수/등록
자진취하내용
엑셀다운로드

순번	접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건명	업체명	신청인(대표자)	수령방법	처리담당자
16	20180676138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주)미코텔	김동석	웹	
17	20180673901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문종석	웹	
18	20180673853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문종석	웹	
19	20180672666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주)신라인터내셔널	이상식	웹	
20	20180672654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주) 이상	이상	웹	
21	20180650672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씨제이	문종	웹	
22	20180650650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씨제이	문종	웹	
23	20180650608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씨제이	문종	웹	
24	20180649922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주) 박월	박월	웹	
25	20180642667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신고(수입)	(주)한중푸드	유영근	웹	

신청정보
품목내역
변경항목
구비서류
결과처리/취소
신고내역

※ [변경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해당 Tab에서 직접 수정해주셔야 변경사항이 정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행추가
← 행삭제

순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3 1	유통기한	20180326	20190326	

축산물 냉동전환(국내) 변경

- ① 국내냉동전환신고 > 국내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변경 처리 메뉴로 들어가,
- ② 냉동전환신고내역, 변경항목 탭 등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

축산물HACCP 냉동전환

식품안전정보원

수입냉동전환신고

국내냉동전환신고

① 국내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처리

국내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변경 처리

국내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대장관리

축산물HACCP평가관리

국내 유통 냉장축산물 냉동전환변경 신청

Page ID : S-ADM-03-03-701

접수일자: 2017-02-06 ~ 2017-02-13

접수번호: []

신청인: []

업체명: []

전환상태: -전환-

담당자: 본인

[조회] [조회조건 초기화]

신청신청리스트

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순번	접수번호	신청사유명	신청내역	업체명	신청인(대표자)	수량(박스)	처리담당자	신청일	처리결과	승인여부	승인일	
1	20170049566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요청(국내)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요청(국내)	주요식품(주)	김민준	1	김민준	2017-02-06	처리완료	처리	0	2017-02-13

< >

② 신청일별 | 냉동전환신고내역 | 변경항목 | 구비서류 | 결과처리내역

*[변경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해당 Tab에서 직접 수정해주셔야 변경사항이 정상으로 잡히므로 합니다.

순번	변경항목	변경일자	변경내용	사용
1	유통기한	20181013	20181031	유통기한 일괄 신청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수입식품 조회, 품목조회, 기준정보 조회 클릭하여 접속

시스템관리 | 품질관리 | 위기관리 | 권한신청 | 로그아웃

운영자 미결/진행 0 완료 24 반려 0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 행정 통합 시스템

수입식품 · 통합게시판 · 위생용품 · 마이페이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업무 처리 **[식약처]**

- 인허가 접수·처리
- HACCP·GMP관리
- 위해정보관리
- 위해조사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 일반관리행정

행정업무 처리 **[공통]**

- 1399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 식중독 예방관리
- 보고관리, 유권해석
- 축산물 HACCP, 냉동전환
-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 수입식품 조회
- 품목조회
- 기준정보 조회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 업체조회 > 통합 업체대장 조회 메뉴 접속 후,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대한 전국 업체(영업대장)정보 검색 및 조회, 조회 범위 체크 시 3년간 점검 횟수, 처분 내용, 면적, 일람 조회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 통합 업체대장 조회

통합 업체대장 조회

소속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사용자명 : 식품안전정보원

※ 전국자료를 검색하기 때문에 조회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업소명과 인허가관할기관 조건을 가능한 입력하세요.

하위기관포함

> 업소명 > 인허가관할기관

> 분류 > 대표자명

> 업종 > 업체

> 인허가번호 > 허가(신고)일자 ~

> 영업상태 운영 휴·폐업 > 대표자생년월일

> 영업소제지 > 법인번호

> 조회범위 보고통독수 등 추가정보를 조회(오래걸림) > 해법인증여부 예 아니오

> 조회범위 급식인원수 표출

조회 조회조건 초기화

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조회결과는 50000건 이하로 제한됩니다.)

순번	분류	인허가관할기관	인허가번호	구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종	업체	주대표자명	업소
----	----	---------	-------	--------	----------	-----	----	----	-------	----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 지도점검조회 > 통합 지도점검결과 조회 메뉴 접속
- ① 조회조건 입력한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지도점검 정보 조회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식품안전정보원

업체조회

관리계획조회

지도점검조회

▶ 행정이력관리번호 조회

▶ **통합 지도점검결과 조회** ①

▶ 감시원 조회

수거검사조회

처분조회

회수폐기조회

시험분석조회

기타조회

통합 지도점검결과 조회

소속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사용자명 : 식품안전정보원

▶ 점검일자 2018-12-11 ~ 2018-12-27 기간 ▶ 점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획명 ▶ 조회범위 소속기관 하위기관 포함

▶ 수립기관 ▶ 수립구분

▶ 행정이력번호 ▶ 인허가번호

▶ 업종 -전체- ▶ 업소명

▶ 점검결과 -전체-

②

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조회결과는 50,000건 이하로 제한됩니다.)

순번	계획수립기관	수립구분	계획분류	계획구분	계획명	행정이력관리번호	점
----	--------	------	------	------	-----	----------	---

식품안전정보 조회

-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 수거검사조회 > 통합 수거검사결과 조회 메뉴 접속,
① 조회조건 입력한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수거검사 정보 조회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식품안전정보원

업체조회

관리계획조회

지도점검조회

수거검사조회

통합 수거검사결과 조회 ①

처분조회

회수폐기조회

시험분석조회

기타조회

통합 지도점검결과 조회

통합 지도점검결과 조회

소속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사용자명 : 식품안전정보원

▶ 점검일자 2018-12-11 ~ 2018-12-27 기간 ▶ 점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획명 ▶ 조회범위 소속기관 하위기관 포함

▶ 수립기관 ▶ 수립구분

▶ 행정이력번호 ▶ 인허가번호

▶ 업종 -전체- ▶ 업소명

▶ 점검결과 -전체-

②

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조회결과는 50,000건 이하로 제한됩니다.)

순번	계획수립기관	수립구분	계획분류	계획구분	계획명	행정이력관리번호	점검기관	합동
----	--------	------	------	------	-----	----------	------	----

식품정보활용시스템 소개

식품정보활용시스템

info.foodsafety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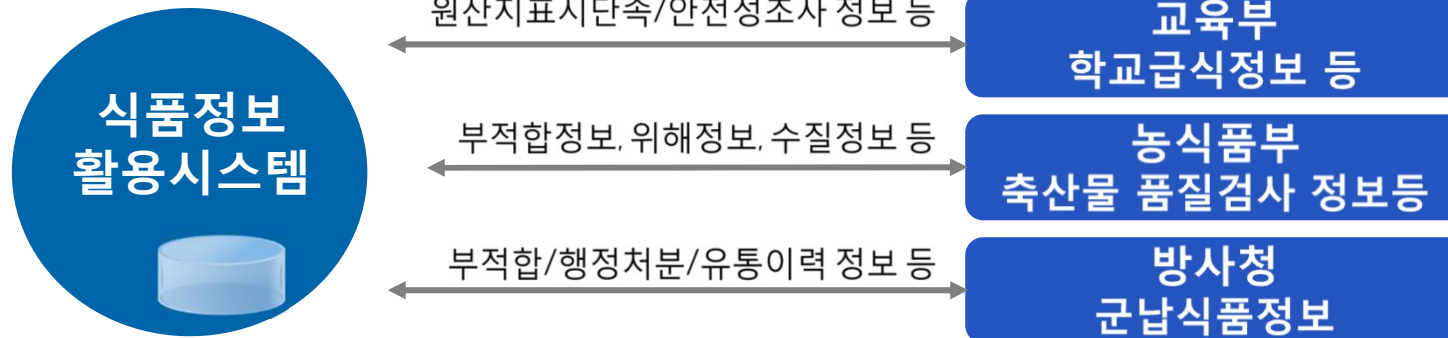
**부처별로 산재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

식품정보활용시스템 소개

○ 시스템간 정보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

부처별 업무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

정보 유통 서비스 (데이터 연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 협의 필요
(문의 : 식약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식품정보활용시스템 소개

관계행정기관(부·처·청 단위) 203종 정보 제공

식약처 84종	통관보류 해외직구 식품정보,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HACCP사후관리현황, 부적합 회수폐기 정보, 식품원재료 정보
행안부 53종	내수면신고대장, 해수면구획어업허가, 해수면수산물가공업신고, 행정처분정보, 축산업인허가(가축사육업 등)정보 등
농식품부 29종	농지경영정보, 농산물안전성조사정보, 축산물안전성조사정보 농축산물원산지 표시단속조사내역정보 등
해수부 14종	수산물안전성조사대장, 패류독소정보 원양어획수산물반입신고현황, 수산물표시단속정보 등
환경부 6종	식품업체 지하수 검사정보, 토양지하수 토양실태조사 정보, 물환경(토양지하수, 상수도, 하수도) 수질정보 등
국방부 4종	군급식 검사기준, 군급식 납품관능검사 군급식 조달업체별 관리품목 현황 등
관세청 3종	원산지단속정보, 전자통관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 전자통관 수입정보 등
교육부 2종, 복지부 4종	어린이집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 학교정보, 학교급식 식단정보 비브리오팀 감시현황정보, 식중독대량환자정보
권익위 1종, 농진청 1종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농약등록정보
조정원 1종, 심평원 1종	프랜차이즈업체(가맹본부)정보 요양병원정보

정보공유(OPEN API)

- ① 업무유형 선택 > ② 제공기관 선택 > ③ 서비스명에 키워드를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
- ④ 일괄신청 버튼 클릭하여 OpenAPI 서비스 이용 신청

식품안전정보 BY

Page ID : S-SHA-01-10-101

1 정보분류

- > 업무유형
 - 전체
 - 업체정보
 - 제품정보
 - 식품안전관리
 - HACCP-GMP
 - 급식관리
 - 식품유예방관리
 - 안전성조사**
 - 수출입관리
 - 시험분석
 - 기준규격

2 제공기관

- 전체
- 관세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방부
- 교육부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유형

- A 전체
- F FILE
- O OpenAPI

3 식품안전정보

업무유형: 안전성조사
 제공기관: 전체
 서비스유형: 전체
 서비스명:
 서비스요약:

4 일괄신청

5 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순번	ID	업무유형	제공기관	서비스명	서비스유형	자료유형	서비스요약
1	NAQ-015	안전성조사>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경보	O	경형데이터	일반농산물 및 친환경 농축산물(생산, 유통 단계)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2	NAQ-014	안전성조사>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잔류물질 실태 분석정보	F	비경형데이터	농산물(생산, 유통, 판매단계)의 잔류물질에 대한 분석정보를 관리
3	NFQ-041	안전성조사>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안전성조사대장	O	경형데이터	생산-저장-거래전단계 수산물로 다소비품목,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정보
4	QIA-185	안전성조사>축산물 안전성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성조사 도축 검사정보	O	경형데이터	축산물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 정보 활용 및 유통단계 검사계획 업무에 활용
5	QIA-186	안전성조사>축산물 안전성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성조사 원유 검사정보	O	경형데이터	축산물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 정보 활용 및 유통단계 검사계획 업무에 활용
6	QIA-195	안전성조사>축산물 안전성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정보	O	경형데이터	축산물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정보

정보조회서비스

① 정보조회서비스 메뉴 선택, ② 정보조회서비스 메뉴로 이동

The screenshot shows the '식품정보활용시스템' (Food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homepage. The navigation menu at the top includes '정보조회서비스' (Information Search Service),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yellow circle labeled '1'. Below the main banner, there are icons for '식품업체정보' (Food Company Info), '제품정보' (Product Info), and '(축산)가축사육업' (Livestock Rearing). A sidebar menu on the left contains '업체정보' (Company Info) and '식품-건가축산' (Food-Livestock) categories. The '식품-건가축산' category is expanded, showing a list of sub-items. A yellow circle labeled '2' points to the '정보조회서비스' (Information Search Service) link in the sideba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search form for '식품-건가축산' (Food-Livestock) with various filters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form, there is a table showing search results with columns for '순번' (Serial Number), '분류' (Classification), '인허가관할기관' (Permitting Agency), '인허가번호' (Permit Number), '업소명' (Business Name), '업종' (Industry), '업태' (Business Type), and '주대표자명' (Main Representative Name).

정보조회서비스

- ① 업체정보 메뉴 선택 > ②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③ 조회된 업체 상세 정보 확인

1 업체정보

2 * 전국자료를 검색하기 때문에 조회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업소명과 인허가관할기관 조건을 가능한 입력하세요.

- 인허가구분: -전체-
- 인허가관할기관: [검색] 하위기관포함
- 대표자명: [입력란]
- 인허가번호: [입력란]
- 영업상태: 운영 휴·폐업
- 영업소재지: -전체- [입력란]
- 조회범위: 보고품목수 등 추가정보를 조회(오래걸림)
- 업소명: [입력란]
- 분류: -전체-
- 업종: -전체-
- 업태: -전체-
- 허가(신고)일자: 2019-12-26 ~ 2020-01-02
- 대표자생년월일: [입력란]
- 법인번호: [입력란]

3 조회하기

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조회결과는 5000건 이하로 제한됩니다.)

순번	분류	인허가관할기관	인허가번호	업소명	업종	업태	주대표자명	업
----	----	---------	-------	-----	----	----	-------	---

시스템 사용자 교육, 권한 신청 및 시스템 문의

* 통합식품정보망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예정 ('20년 5월)



통합식품정보망 시스템 문의 1899-5590



IV

식품업체 지도 · 점검 및 수거 · 검사

식품안전관리과 조성훈 사무관

목차

Contents

- I 2020년 안전관리 기본 방향
- II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
- III 지도 · 점검 세부 계획
- IV 수거 · 검사 세부 계획
- V 당부 말씀

2020년 안전관리 기본 방향

- ☞ (다소비식품·시설) 명절, 휴가철 등 시기에 **집중 점검**
- ☞ (소비트렌드 대응)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 식품 등 소비 급등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 (취약계층·시설) 키즈카페, 요양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감성주점, 장례식장 등 위생취약시설의 촘촘한 관리**

※ 교육부, 소방청, 지자체 등 합동점검 **추진**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

I. 언론 지적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 간편식, 배달음식점, 감성주점, 식육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 확대

- (감성주점) 소방, 건축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 연 2회 점검 실시
- (식육음식점) 메뉴판에 부위명 표시 적정성 여부 등 특별점검 실시

☑ 온라인 전용마켓, 마트 시식코너 대상 점검 강화

- (온라인 전용마켓)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전수 점검 실시
- (마트 시식코너)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점검 실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점검, 수거·검사 등 면제 (민원신고 등은 제외)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

II. 국회 지적에 따른 안전관리 확대

☑ **패스트푸드·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집중 관리 → 점검 확대(불시 및 전수)**

- (패스트푸드) 햄버거병 관련 문제 지속 제기, (프랜차이즈) 위반업체 지속 증가

☑ **반복 위반업체 관리 제도를 제조·가공업체에서接客업체까지 확대 → 3년간 5회 이상 위반한 업체 등은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III. 감사 지적(위생관리등급제 운영 부실)에 따른 보완

☑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대상을 전체 제조·가공업체에서 해썬 적용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 변경**

지도 · 점검 세부 계획 (1)

지방식약청 · 지자체
합동 점검
(10회)



☑ (1분기)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1차)

* 햄버거, 배달음식, 간편식 등

☑ (2분기) 봄 나들이철 식중독예방

☑ (3분기)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2차),
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지도 · 점검 세부 계획 (2)

지방식약청
(24회)



- ☑ (1분기)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밸런타인데이(특정시기) 초콜릿 제조판매업체, 봄철 대비 탁약주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주류 및 건강기능식품업체
- ☑ (2분기) 주류 법령 위반업체,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체, 식용불가 농산물 판매업체, 과실주 업체, 하절기 맥주 제조업체, 군납 식품제조업체 (2회)
- ☑ (3분기) 하절기 탁약주 제조업체, 증류주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건강기능식품업체
- ☑ (4분기) 과실주 제조업체, 탁약주 제조업체, 주류 법령 위반업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기타 주류 업체, 주류 유통·판매 관리, 군납 식품제조 업체 (2회)

지도 · 점검 세부 계획 (3)

지자체
[23회]



- ☑ (1분기) 식육가공품,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온라인 전용마켓·반찬가게 등,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업체,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 ☑ (2분기) 가정의달 대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목장형 유가공업체, 뷔페업소 등 식품접객업체, 액란제품 제조업체, 위생취약분야 조리·판매 업체, 다중이용시설 조리판매업체,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휴가철 위생취약시설 식중독예방, 프랜차이즈 원료·PB제품·홈쇼핑제품 제조업체
- ☑ (3분기)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 (4분기)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육포장처리업체, 영양성분 등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빼빼로데이 등 특정일 대비 식품제조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위생취약시설 식중독예방,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사회특정계층 이용 집단급식소, 연말연시 케익 제조·판매업체

수거·검사 세부 계획

지속

- ☑ 하절기 다소비식품 등 조리식품 및 학교급식 등 검사
- ☑ 회수 이력업체 출고 전 검사(연중)
- ☑ 특별관리 유형 집중 검사
- ☑ 유통 벌꿀 항생제, 단순 농산물 잔류농약 등 위해우려 성분 검사
- ☑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검사

강화

- ☑ 소비 트렌드 반영 수거검사
 -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민감 계층(영유아식품, 고령친화식품) 대상 식품
- ☑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선제적 검사
- ☑ 제도가공업체 입고 원료(농축수산물) 검사
 - 백수오 검사명령 종료(예정)에 따라 백수오 원물 사용 제조업체 검사 강화
- ☑ 공유주방 시범사업에 따라 공유주방 생산제품 검사(신규)

당부 말씀 (1)

공유주방 시범 업체 안전관리 협조

☑ 운영 실태 조사 (매월, 지방식약청)

-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여부
- 주야간 영업자 인수인계 적정 여부 및 '위생가이드라인(식약처 제공)' 준수 여부 확인 등

※ 유통판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즉석판매제조가공업) 표시 의무화, 자가품질검사(3개월 1회 이상) 등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지자체)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및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1회/2개월)
- 가공식품 대상 기준규격 검사 실시(1회/반기)

※ 공유주방 표방 업체(개별형 주방)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1회/반기)

당부 말씀 (2)

수거·검사 관련 협조

- ☑ 온라인 수거검사 강화 → 지자체 온라인 수거 가능하도록 준비
- ☑ 모든 지방청 및 시·도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 검토·확인
- ☑ 일부 항목 부적합 된 경우 모든 항목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부적합긴급통보 시스템 입력
- ☑ 연구사업 시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부적합 결과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 통보

당부 말씀 (3)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피해신고 관련 조사처리

☑ 다음의 **중대 피해사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신속한 조사처리를 위해 식약처로 유선보고 및 협의

- 1) 어린이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신고
- 2) 식품 아나필락시스(쇼크) 및 심각한 알레르기 등 피해신고
- 3) 처리기관에서 위해하거나 중대한 피해 사례로 판단되는 신고 등

※ 접수받은 즉시 보고 및 현장확인 실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신속 처리

※ 조사 결과 통보 방식: 피해 원인에 대한 상세 조사내용의 서신 통보를 원칙

당부 말씀 (4)

민원 처리기한 지연 예방을 위한 관리 계획

☞ 현재 - 관할 기관 이첩 시 담당자에게 알림문자 발송

- 처리기한 도래 시(4일전) 붉은색 표시 알림

- 미처리 건 처리 요청 공문 발송

☞ 강화 현행 + - 처리기간 2일 전 문자 발송

- 처리기한 종료 후 1주일 단위로 전화

- 월 1회 처리 요청 공문 발송

※ 1399 민원처리 담당자를 입력하고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의 경우에도 변경된 담당자 입력

당부 말씀 (5)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관련 (19.12.12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 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7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다만, 식품위생감시원 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V

HACCP 제도 운영

<HACCP 의무 적용 및 재정·기술 확대 지원 운영 등>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김홍태 사무관

HACCP 제도 운영

I. 운영 현황

➔ HACCP 인증업체수 꾸준히 증가

- 인증현황 : ('19) 19,494(가공품 10,168)개소 인증
 - 식품 : 6,566개소, 축산물 : 12,928개소
 - 인증업체수(누계) : ('13) 10,465 → ('18) 18,491 → ('19) 19,494 개소
 - HACCP 적용 생산비율 : ('13) 45.9 → ('18) 85.2 → ('19) 86.5%
- '17년을 기점으로 유통되는 식품의 80% 이상이 HACCP 적용제품으로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제도 내실화를 통한 인증업체 관리 강화 요구



Ⅱ. 기본방향

› HACCP 인증 확대 지속 추진

- 즉석섭취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1억↓ 또는 6명↓) 차질 없는 의무적용 추진('20.12 시행)
- '19년도 총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전체 생산식품 의무적용('12.1 시행)
 - * 의무 시행중인 업체가 신규로 식품유형 추가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신규로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가능 (신청: 인증원)
- HACCP 의무대상('20.12 시행) 유예 및 연장심사 유예업체 관리
- 의무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 재정지원(시설개선자금)
- HACCP 준비업체에 대한 전담관리제 운영 및 업체 수준별(1~3단계) 체계적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정보 제공과 자발적인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TV 등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홍보강화를 소비자 인지도 향상
- 식약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HACCP 제도 운영

Ⅱ. 기본방향

▶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모든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전면 불시평가** 실시로 인증업체의 **HACCP 기준 상시 운영을 통한 내실화 도모**
 - 연초에 평가대상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업소에 대해 불시평가 실시
 - 식중독 발생, 기준규격 위반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즉시 평가 실시
 - * 기타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 및 영양성분 부적합 업체 등은 평가 제외
-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3년 주기) 시행
- 정기 조사평가 차등관리제 적용
 - 정기 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관리제 운영 및 미흡업체 기술지원 실시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의 경우 차등관리 대상에서 제외

HACCP 제도 운영

Ⅱ. 기본방향

›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적용 확대

-평가 결과 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인증취소

* 원부재료 검사검수 미흡, 지하수 살균소독 미흡,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CCP공정 관리 미흡(가열제품 → 모든제품)
+ 위해요소분석 미실시(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

- HACCP 원칙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엄격히 평가하고, 위반 시 즉시 인증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기획평가 실시

- 계절, 성수기(HACCP 운영 취약시기)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별 계획 수립·운영

- '20년도 지도·점검 추진 일정에 맞춰 기획평가 일정 수립 및 평가 실시

HACCP 제도 운영

Ⅲ.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구분	식품		축산물	
	대상	적용시기	대상	적용시기
완료	수산물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 기타 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중 빙과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06.12~'12.12	도축업 집유업	'02.6~'03.6 '14.7~'16.1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08.12~'14.12	알가공업	'16.12~'17.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떡류 중 '13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10명이상	'16.12~'17.12	유가공업	'15.1~'18.1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17.12~	식용란수집 판매업	'18.4.25~
진행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국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섭취식품	'14.12~'20.12	식육가공업	'18.12~'24.12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HACCP 제도 운영

Ⅲ.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식품HACCP 의무적용 현황

의무적용품목(가공식품)

 어묵류	 냉동식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물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배추김치 '08.12. ~ '14.12. 의무적용 완료
 비가열음료 '06.12.~ '12.12. 의무적용 완료	 레토르트식품	 빙과류	

HACCP 제도 운영

Ⅲ.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식품HACCP 의무적용 현황

신규 의무적용 (8개 품목)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모든 품목
~ '17.12. 적용완료

'14.12.~ '20.12. 신규 의무적용 진행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소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HACCP 제도 운영

Ⅲ.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축산물HACCP 의무적용 현황

▲ 의무적용(생산단계)



도축업

'02.6. ~ '03.6. 의무적용 완료



집유업

'14.7. ~ '16.1. 의무적용 완료

HACCP 제도 운영

Ⅲ.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축산물HACCP 의무적용 현황

▲ 의무적용(가공단계)



유가공업

’15.1.~’18.1. 의무적용 완료



알가공업

’16.12.~’17.12. 의무적용 완료

HACCP 제도 운영

Ⅲ.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축산물HACCP 의무적용 현황

▲ 의무적용 추진 중



식육가공업

식육가공업 HACCP의무적용 예정 ('18.12 ~'24.12)

- 1단계 : '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18.12.1시행)
- 2단계 : '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소('20.12.1시행)
- 3단계 : '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22.12.1시행)
- 4단계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4.12.1시행)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의무적용 완료 ('18.4.~)

-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18.4.25.) 후 6개월이내

HACCP 제도 운영

IV.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재정지원

구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p>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식육가공업)</p> <p>*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제외</p>
지원금액	<p>위생안전시설 및 설비소요자금 (최대 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 (최대 1천만원 한도)</p>

기술지원

정책·기술지원	교육·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썹 관리기준서 보급 확대 ○ 해썹 기준서 재검토 ○ 해썹 중소기업체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 해썹적용 준비업체 전문 기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전화 운영(1599-1102) ○ 해썹인증업체 사후관리 운영지원 ○ 해썹 인증 및 정기평가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썹 준비업체 기준서 작성 등 실무교육 ○ 해썹 지도관 신규·보수 교육 훈련 ○ 해썹 적용업체 견학 프로그램 운영 ○ 해썹 전용 홍보사이트 및 홍보전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정보, 견학 후기, 교육 자료 등 운영 <p>* http://www.haccp.or.kr</p>

HACCP 제도 운영

V. 기관별 역할(식품)

구분	식약처(본부)	지방청	시·도(시·군·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 제도 및 관련 업체 등 기술 지원 업무	○HACCP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추진 ○ 기술지원 계획 총괄 ○ 해썹 관리 매뉴얼 등 개발	○ 관내 해썹인증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민원상담 등	○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현황조사	○ 해썹인증 및 적용업체 기술지원 ○ HACCP 적용업체의 기준서 재검토 및 현장검증 기술지원 ○ 기술지원 효과분석 ○ HACCP표준기준서, 매뉴얼 개발 및 위해요소 분석 정보제공 등 ○ HACCP통계 관리
○해썹 관련 재정 지원 업무	○해썹 적용 희망업체 지원 계획 총괄 ○시설개선자금 비용 지원	○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 해썹 적용 희망업체 시설개선자금 사업 안내	○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 사업 설명회 개최(연초)
○해썹적용업체 조사·평가	○ 해썹업체 조사·평가 총괄 ○ 지방청별 사후관리 부적합률 분석 및 관리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분석 및 관리	○해썹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 ○계절별 등 성수기 취약시기 기획평가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수시평가 및 특별교육 ○해썹업체가 미인증업체에 위탁생산 여부 수시 확인	○ 해썹 미인증업체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위반 해썹업체 행정지도 및 수시 교육·홍보로 재발 방지(시·도에서 시·군·구 관리감독 철저)	○ 해썹 인증평가, 유효기간 연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신규인증, 연장심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및 홈페이지 게재
○대국민 홍보	○TV, 지하철 공익광고 등 홍보 계획 수립·시행 ○홍보물 자료 개발·보급 등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한 홍보	○ 지역 정보지 및 각종 지역 행사 등을 통한 해썹제품 및 제도 홍보	○ 세미나, 포럼 개최 ○ 식품박람회 등 홍보

HACCP 제도 운영

V. 기관별 역할(축산물)

구분	식약처(본부)	지방청	시·도(시·군·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제도 및 관련 업체 등 기술 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추진 ○ 기술지원 계획 총괄 ○ 해썹 관리 매뉴얼 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해썹인증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민원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썹인증 및 적용업체 기술지원 ○ HACCP 적용업체의 기준서 재검토 및 현장검증 기술지원 ○ 기술지원 효과분석 ○ HACCP 표준기준서, 매뉴얼 개발 및 위해요소 분석 정보제공 등 ○ HACCP통계 관리
○해썹 관련 재정 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썹 적용 희망업체 지원 계획 총괄 ○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썹 적용 희망업체 시설개선자금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썹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 사업 설명회 개최(연초)
○해썹적용업체 조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적용업체 조사·평가 및 검증계획 총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분석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알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사후관리 ○ 세부 검증계획 수립·시행 ○ 조사평가 미흡업소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작업장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작업장 조사평가 ○ 인증내역 유관기관 통보(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및 홈페이지 게재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홍보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 교육 및 각종 행사시 해썹 제품 및 제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홍보 ○ 축산물박람회 등 홍보 ○ 세미나, 포럼 개최


HACCP 제도 운영

VI. HACCP 관리체계

구분	분류	인증 및 연장심사	사후관리	행정처분
식약처 소관 HACCP	<식품> (의무) 과자류 등 16개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인증원	지방청	지방청
	<축산물> (의무)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충족요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인허가시 확인 * 시행 이전 인증원	지방청	자치단체
	(자율) 축산물판매업 등 의무 이외 업종	인증원	인증원	지방청
농림부 소관 HACCP	<축산물> (의무) 도축업, 집유업	HACCP 충족요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인허가시 확인	농식품부 검역본부	자치단체
	(자율) 농장	인증원	인증원	농식품부 검역본부

HACCP 제도 운영

I. 적용대상 및 시기

 전체 제조업체 약 25.2%만이 HACCP 인증('19년말 기준)

- 식품 및 축산물 전체 제조업체 40,323개소('17년 기준) 중 10,168개소 HACCP 인증

 HACCP 미인증업체에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지원

- '19년 목표 : 총 5,296개소(식품: 3,380개소, 축산물: 1,916개소)

* HACCP 미인증업체인 5,491개소 적용 지원('19.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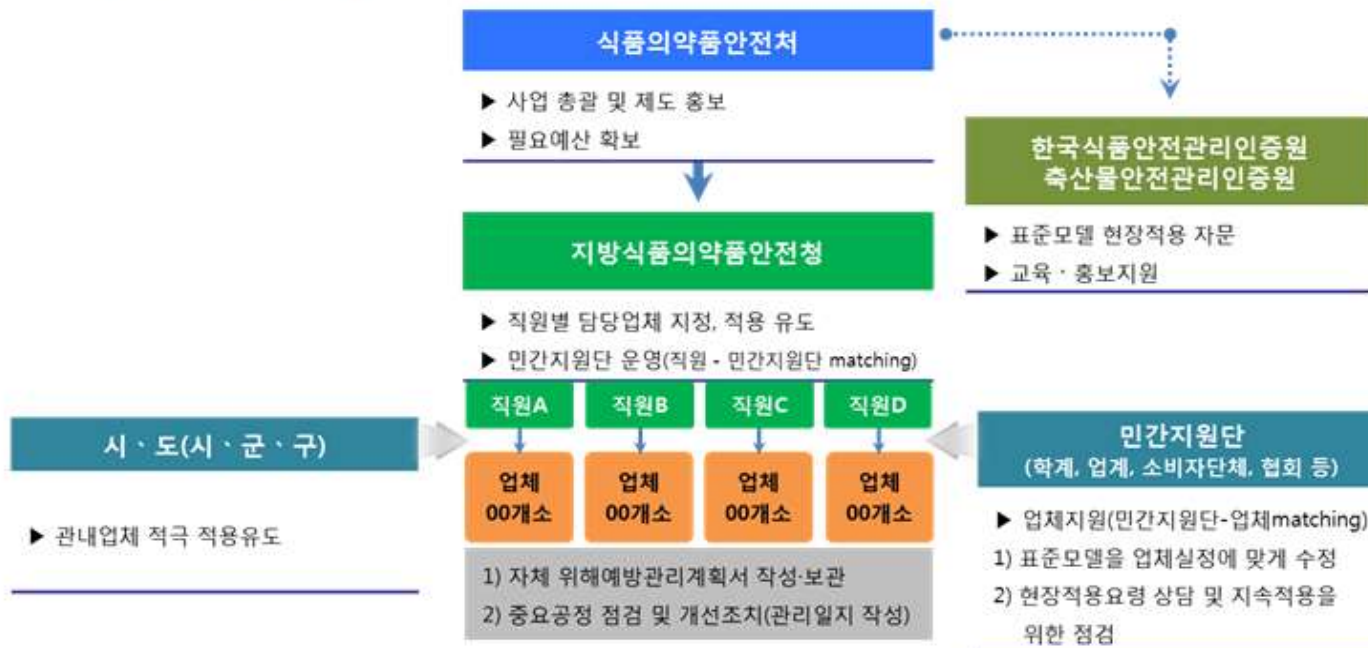
- 적용지원 원칙 : 기 적용 업체 중 지속 지원 필요업체를 선정하여 HACCP Plan 적정성 여부 확인 → 내실화 추진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전반에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HACCP 제도 운영

II. 운영방법(기관별 역할 분담)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추진도





VI

식품 표시 법령 체계

식품표시광고정책TF 신영희 사무관



개 요 |

추진방향

- ❖ 식품등 표시 광고 내용 및 진위여부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 예
- ❖ 시행에 따라 새로운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근거 법령

- ❖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 ❖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7개 고시 1개 예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준
 - 소 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
- ❖ 기타 관련 고시(3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개 요 II

법률 주요 내용

- ❖ 3개 법령에서 운영하던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표시의 기준,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4조-제6조)
 - 기존의 개별법에서 운영하던 규정 이관
- ❖ 광고의 기준(제7조)
 - 개별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운영하던 규정 이관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제8조)
 - 개별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허위 과대의 표시로 운영하던 규정 이관
- ❖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 도입(제9조)
- ❖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제10조)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이관
-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신설(제13조)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 교육홍보 의무 부여
- ❖ 행정처분, 회수폐기, 과징금, 위반사항 공표, 벌칙, 과태료 등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운영하던 규정 이관

개 요 III

법률 체계

기존	현행
(법률)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위생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2,3,4, 제13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위생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6조, 제32조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고시)	
<p>1. 식품등의 표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내용 삭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내용 삭제) 영양성분 표시대상, 1일 영양성분 기준치(내용 삭제) 식품별 표시기준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금지(내용 삭제) 	<p>1. 식품등의 표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식품별 표시기준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p>2.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기준(제정)</p>

개 요 III

법률 체계

기존	현행
(고시)	
2. 축산물의 표시기준(폐지)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
3.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3.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4.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 •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4.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5.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5.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6.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폐지)	6.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정)
7.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폐지)	
8.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폐지)	7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정)
(훈령)	(예규)
9.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폐지)	8.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제정)

주요 확인 사항 I

유예기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19.3.14)되었으나, 개별 법률 부칙에 따라 이 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조 가공 수입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은 **2021.3.14**까지 **종전의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음

부당한 표시 광고 대상

- ❖ 식품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사용 정보
 - ❖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산란일에 관한 사항
 - ❖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등이력추적관리
 - ❖ 축산물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안정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영업소 명칭은 2021년 3월 14일 부터 시행

유예기간 확인 I

규정	고시일	기존 시행일	개정 시행일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주류 및 축산물의 경우 위탁생산제품 표시사항	'18.12.19.	'22.1.1.	
.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에” 등의 표시사항	식품 '18.4.26. 축산물 '18.12.19.	식품 '20.1.1. 축산물 '22.1.1.	
. 식용란 및 닭·오리의 표·단락 표시 및 표시 사항의 활자 크기에 관한 표시기준	'18.4.26.	'20.1.1.	
. 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사항	'18.4.26.	'20.1.1.	
.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를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동 업체 정보 표시사항	'18.12.19.	'22.1.1.	'21.3.14
. 과·채주스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동에 대한 표시방법 및 주의 문구에 관한 표시사항	'18.12.19.	'22.1.1.	
. 메주의 대두함량의 표시사항	'18.4.26.	'20.1.1.	
.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문구에 관한 표시사항	'17.12.6	'20.1.1.	
. 효소식품의 α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표시사항	'17.12.6	'20.1.1.	

유예기간 확인 II

규정	고시일	기존 시행일	개정 시행일
.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 표시방법	‘18.2.23.	‘20.1.1.	
. 식육함유가공품의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 표시	‘17.12.6.	‘20.1.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식육 함유 가공품 제외)을 제조가공한 경우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18.12.19.	‘22.1.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소시지류 충전시 사용된 케이싱에 관한 표시	‘18.12.19.	‘22.1.1.	
. 알함유가공품의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 표시	‘17.12.6.	‘20.1.1.	
.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해동에 관한 표시	‘18.2.23.	‘20.1.1.	’ 21.3.14.
. 혼합제제류의 경우 구성하는 식품첨가물의 함량 표시	‘17.12.6.	‘20.1.1.	
. 제품명에 원재료 및 성분 통칭명을 사용한 경우 글씨 크기에 관한 표시기준	식품 ‘18.4.26. 축산물 ‘18.12.19.	식품 ‘20.1.1. 축산물 ‘22.1.1.	
. 축산물 주표시면에 원재료명을 표시한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18.12.19.	‘22.1.1.	
. 식품에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기계발골육’ 등의 표시	‘17.12.6.	‘20.1.1.	
. [도3] 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서식도안의 글씨크기에 관한 표시 기준	‘17.12.6.	‘20.1.1.	

주요 확인 사항 II

실증제도

- ❖ (개념)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 ❖ (목적) 부당한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거래를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
- ❖ (대상)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처리 절차) 식약처(지방청 포함), 시도가 실증대상 표시 광고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 우려 조항을 명확히 하여 식품표시광고정책 TF에 의뢰로 시작



주요 확인 사항 III

식품등 표시 제도 교육 홍보

- ❖ 전국 권역별 표시 제도 민원설명회
 - (대상)식품 등 제조 수입 판매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 ❖ 식품등 표시 광고 제도의 이해 교육 과정 개설
 - (목적)비고의적 법 위반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영업적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집중 실무 교육
 - (대상) 식품등 제조 수입 판매 영업자 및 종사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과정 개설(2회/년)
- ❖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영양표시 규정 및 관련 법규 이해를 통한 영양표시 담당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 (대상) : 식품등 제조 수입 판매 영업자 및 종사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 ❖ 식품알레르기 예방 교육
 - (대상) 소아 청소년, 일반소비자(성인), 식품조리종사자

 식품 표시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업자 등에게 교육 참여 권고 요청

주요 법령 개정 예정 사항 I

시행규칙

❖ 입법예고(6.27)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경우)의 조리커피인 경우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 적용
(0.15mg/ml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등 주의사항 표시)
- 제조일자 허위 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현행)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1차)

❖ 입법예고(12.30)

- 36개월 미만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별도 신설
-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과 동일한 카페인 표시 기준 적용
- 품질유지기한 변조 등의 경우 유통기한 변조 등의 처분기준과 통일

주요 법령 개정 예정 사항 II

식품등의 표시기준

- ❖ 행정예고(10.22)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 수산물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공전, 공전에 미등재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함
 - 투명포장 자연산물 등에 대해서도 표시 의무화. 단 신선식품은 생산일자 생략 가능
 - 직거래 투명포장 농임수산물,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산물은 한글표시 생략 가능
 - 식용란 포장지의 표시사항 중 농장 명칭 표시 규정 삭제
 - 6개월 마다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표시하는 경우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규정개선
검사주기를 1년으로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 추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 ❖ 행정예고(10.23)
 -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3개이하)의 명칭과 1회 섭취량당 함량 표시(4개 이상은 정보표시면에 진하게 표시)
 - 기능성 원료 이외 기타 원료에 대한 명칭, 함량 사진 등을 활용한 표시 금지



VII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식중독예방과 남백상 사무관

음식점 위생등급제 :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1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중독예방과 남백상 사무관



2020년 식중독 예방 목표

1. 예방관리

- 시설 집중관리(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 지하수 소독장치 사후관리

2. 사후관리

- 식중독발생 신속보고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3. 교육, 홍보

- 식중독 예방 교육(집단급식소, 업체 등)
- 식중독 예방 홍보(TV, 인터넷, SNS 등)
- * 계절별 맞춤형 교육 홍보 중요

원인제거

확산방지

예방실천

인구백만명당
100명 이하

연간 주요 추진 내용

일정	주요내용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원인·역학 조사반, 현장 점검, 신속검사 체계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등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1~3월)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개최(고위급) •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교육 • 식중독예방 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예방 합동점검(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판매업체 등)

연간 주요 추진 내용

일정	주요내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예방 합동단속(청소년수련원, 도시락제조업소 등) • 식중독 신속보고 훈련 •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교육 •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특별교육(4~7월)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현장대응 훈련(지방식약청 주관) •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전문강사 교육 • 하절기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 개최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위생취약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점검 • 식중독예방 전문강사양성교육 • 식중독 현장대응 훈련(시·도 주관, 6~10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7~9월) • 식중독예방 전문강사 교육

연간 주요 추진 내용

일정	주요내용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 예방 합동단속(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판매업체 등)• 식중독 예방 역량강화 교육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 식중독 현장대응 훈련(시·도 주관)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 개최(실무급)• 위생취약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식중독예방 특별점검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2020년 달라지는 정책



2020년 달라지는 정책



1. 식중독 원인 합동조사

❖ 시·도가 다른 식중독 발생시 **합동조사반 구성**

(예시) 경기 안성시 A 중학교 수학여행 → 경주 식당, 부산 식당

- (1일차) 기초조사(경기도, 안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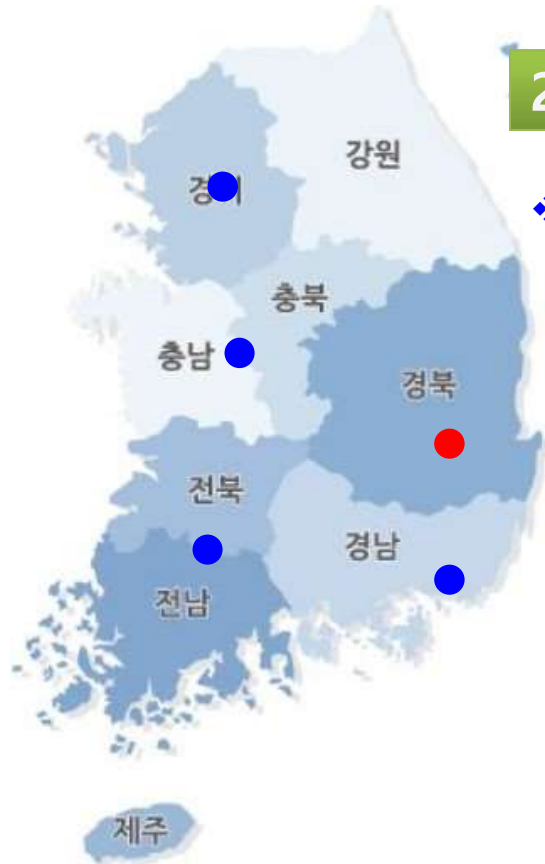
- (2일차) 유관기관 합동조사(지방식약청, 경주시, 부산시)

☞ 식중독 원인규명 강화

2020년 달라지는 정책

2.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개 권역 확대

❖ 대구, 경북지역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제작, 배치



2020년 달라지는 정책

3. 식중독 조기경보 전파 및 통계 정보 가독성 향상

❖ 학교 외 집단급식소 단계적 등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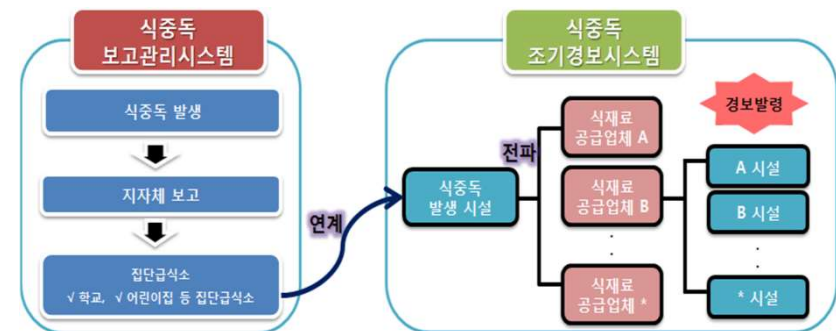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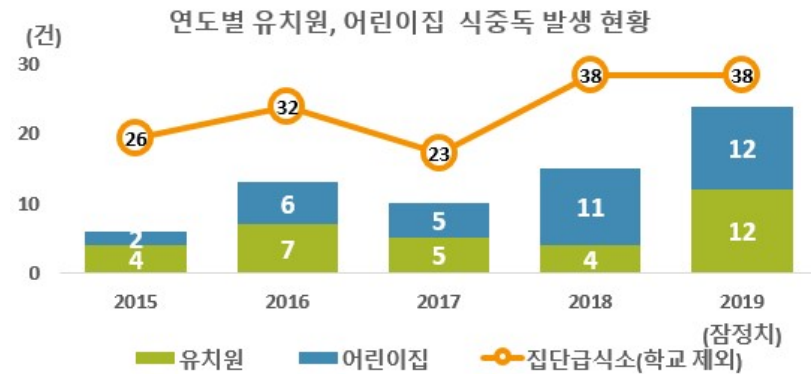
- 유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록(20년)
-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록(21년)

❖ 집단급식소 운영자 조기경보 직접전파 가능

- 적극적 식중독 예방 활동 시
과태료 감면 법근거 마련, 추진

❖ 식중독 통계 '더 쉽게' 제공

- 통계 제공방식 개선(표 → 그래프, 원하는 정보 추출 기능 추가 등)
- 식중독 지수, 식중독 통계 등을
모바일 식품안전나라와 연계 제공



2020년 달라지는 정책

4. 식중독 원인규명을 향상

❖ 식중독균 전장유전체 활용

- 인체(질본), 식품(식약처) 간 식중독균 유전체 분석법 표준화 추진

* (기존) PFGE → (강화) PFGE + NGS

❖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확대 추진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에서 분리된 균주에 대한 신·변종 여부 등 감시 체계 구축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식중독균 특성정보 DB화

* (18) 10,414건 → (19) 12,054건 → (20목표) 13,500건



2020년 달라지는 정책

5. 기타 사항

❖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 대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관리 강화

* 학교급식(초중고) 전수점검 → 대학교(700여개) 점검 추가
: 점검기간 7일 → 10일로 연장

❖ 노로바이러스 감염 조리종사자 배제

- 노로바이러스 신속검사키트(임신진단키트 원리) 제공 후 감염자 자율 배제 유도

❖ 식중독 예방 실천을 위한 소통 강화

- 사례중심, 데이터 기반, 행동실천 유도형 홍보



당부사항

- ❖ **식중독발생 원인 조사절차 규정 시행('19.10.22.)**
 - 발생보고(시·군·구청장) → 식약처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활용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는 식약처장, 지방식약처장에게 유선 통보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조기경보시스템 등록 적극 유도('19년 국정감사 지적)**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조기경보시스템에 등록 여부 확인·안내
 - 또한, 식중독 발생시 조기경보 직접 전파 홍보
- ❖ **식중독균 검출 시 균주 제출(분석기관 → 평가원 미생물과)**
 - 식중독 원인조사, 기준·규격검사, 식중독균 모니터링 검출 식중독균

당부사항

❖ 노로바이러스 감시 체계사업 효율성 향상

- 목표건수: 680건(지방식약청 360건, 시·도보환연 320건)
- 노로바이러스 유행 시기 집중 검사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 합동점검, 집단급식소 점검 등 현장 점검 시 정상작동 여부 확인
 - * 이전설치, 철거, 불용 등 발생 시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로 사전 협의
 - * 현황: 1,612개(`12년 867개, `13년 745개)



2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20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방향]

- ✓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 확대
- ✓ 위생등급제 운영의 효율화 추진
- ✓ 제도 운영의 무게 중심을 지자체로 이동
- ✓ 민관 연계를 통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1.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지자체별 '위생등급 적용 우선구역' 선정 후 신청 평가 추진

* 위생등급 적용 우선구역 : 음식점 모여있는 일정 구역, 구역내 음식점에 대해 등급적용이 우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공항, 도로 휴게소, KTX역, 쇼핑몰 등)

- 우선구역 : '당연구역, 자율구역'으로 구분하여 선정 운영

* 당연구역 : 공항,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두 우선구역으로 선정

* 자율구역 : 백화점, 호텔, 쇼핑몰, 관광특구 등 (시군구별 1개이상 선정)

➡ 우선구역 내 모든 음식점 대상으로 위생등급지정 추진

1.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음식점 위생등급 적용 우선구역' 선정 절차

- (시군구) 관내 '당연구역' 및 '자율구역' 선정 지정(안) 마련 후 시도 보고
- (시도) 시군구의 '우선구역 추진계획' 확정 후 시군구 시달 및 식약처 보고

* 추진계획 : 각 시군구 우선구역 선정 결과 및 구역 내 음식점 규모 및

지정 추진 계획 등 포함 (인센티브, 예산 사업추진계획)

* 시군구는 시달된 계획에 따라 추진 (구체적 목표치 : 20년 음식문화개선사업 공문)

* 보고 일정 : 시군구(1.30) - 시도(2.15) - 식약처

1.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우선구역 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방법

- 시군구는 우선구역내 '**음식점 위생수준을 사전 모니터링**'

* 위생수준별 관리 : 80점이상(현장신청), 80점미만 (컨설팅 6개월 후 재모니터링)

* 사전모니터링 : 평가자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

- 모니터링 후 위생수준이 낮은 업체 : 컨설팅 후 지정신청

* 위생수준이 낮은 업체는 6개월 후 추가모니터링 실시 후 지정 신청

✓ 우선 구역 선정 수 및 구역 내 음식점 등급지정 건수(비율) 등은 정부포상기준 반영

2. 위생등급제 운영의 효율화 추진

❖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 모범음식점 통합 및 지정 일원화

* 개정안 발의(장정숙의원, '19.1.15),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19.3.13)

❖ 지자체의 음식점 대상 인증업무 역량을 위생등급제로 집중

*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으로 지자체별 음식점 대상 인증을 실시

* 과거 시책의 자체인증제는 평가 등을 통해 폐지 또는 등급제로 통합

- **모범음식점** 지정(또는 재심사)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 유도**

* 지자체는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 및 평가계획 마련 후 실시

3. 제도운영의 무게중심을 지자체로 이동

❖ 평가대상 확대에 대비한 **평가기관 추가**(’20년 시행령 개정)

- (현행) 인증원 -> (개정) 인증원+시도별 평가기관

- 평가기관의 눈높이 평준화를 위해 인증원은 지자체 평가기관을 교육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 마련

❖ 유효기간 연장은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 평가 추진

- (시군구) 업체 전화사전고지 : 유효기간 도래 여부, 연장절차

* 지정평가 : 인증원 위탁 또는 지자체 자체 평가 추진

4. 민관연계를 통한 위생등급제 활성화

- ❖ 음식문화개선 협의체에 '위생등급제 확대 T/F' 구성 운영
 - 프랜차이즈 분야별 협의체 추가 구성 (안건에 따라 운영)
 - 식약처와 지자체간 프랜차이즈 본사 등급제 추진 현황 정보 공유
- * 지정 추진의지(계획), 기술지원 현황, 등급 지정현황 등

4. 민관연계를 통한 위생등급제 활성화

❖ 당부사항

- 지자체는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평가 준비 물품 또는 위생유지 물품 지원 확대

> 시군구는 필요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방송, 일간지,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맛집, 관광책자에 지정업소 소개, 블로거, SNS를 통한 지역 홍보

> 지자체 경연대회, 페스티벌 등 행사 교육 시 위생등급제 홍보

❖ 참고사항

- 2019년 국민참여예산 아동급식 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110개소(예산 816백만원 전액 집행)

>주방 바닥, 천장, 환기시설, 냉장고 등 개선

>개선 사항 분석하여 지원모델(안) 지자체 배포 예정

VIII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

수입식품등 수거·검사

추진 배경

서류검사 등으로 통관된 수입식품 및 위해정보 관련 제품 수거·검사

* 수입 : '16년 625,443건 → '17년 672,273건 → '18년 728,114건 (위해정보 4만여건/연간)

☞ **계획명 : 유통 수입식품등의 수거·검사 (p.310참조) <지방청>**

- [기본방향] 부적합 이력품목, 장기간 서류검사 대상 품목, 국민다소비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국·내외 위해정보 및 사회적 이슈 관련 제품 등 중점 수거·검사

★ 부적합 이력제품 등 지방청별 검사 건수 등 세부 검사 계획 별도 시행 예정(1월)

구분	총계	일상 수거·검사					기획 수거·검사	
		일반 (다소비식품, 부적합 등)	서류통관	조제 분유	방사능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계절별 성수식품	위해정보
총계	7,500	3,500	120	100	2,000	60	720	1,000

★ 위해정보 관련 수거검사 요청 사항은 기간내 검사 완료 및 결과 공유 요청

수입식품등 수거·검사

추진 배경

‘식품위생법’ 제22조 관련 출입·수거·검사 실시 <지자체>

→ 기타식품판매업소 등에서의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 (협조요청) 가급적 자체 수거·검사계획 수립해 주시고, 우리 처(수입유통안전과)에 공유

☞ [지방청, 지자체 공통 당부사항]

- (회수) 부적합 제품 신속 회수 등을 위해 유통 초기 제품(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 수거
 - * 신선 농산물은 가급적 통관 직후 제품을 수거하고 신속히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 (방사능) 일본산 수입식품(농·축·수산물 포함)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하지 말 것
 - * 일본산 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전수 방사능 검사 실시 중임, 추가 중복 검사 시 행정 및 예산낭비
- (자연산물) 수입 농산물, 수산물 등 수거 시 반드시 수입신고확인증 확인 후 수거 (신속회수)
- (전산입력)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데이터 입력 요청
 - * 시스템 입력 시 반드시 국외로 구분하고 제조국과 수입업소명, 제품명을 정확히 입력

수입식품등 지도·점검

추진 배경

위반업체 등 영업자 관리 및 사각지대 점검을 통한 수입식품 안전확보

☑ 계획명 : 수입식품업체 등 지도·점검 관리 (p.314참고)

- (영업자) 행정처분 이력 업체 및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수입상위업체 등 관리
- (사각지대) 정식통관되지 않은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차단을 위한 제도권 밖 안전관리

☑ 일상점검 <지방청>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다빈도 업체(600개소), 점검이력 없는 매출 상위업체(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수입판매업 800개소), 설·추석 성수식품 수입업체(100개소) <총 1,500개소>

★ 점검 업체 리스트 등 세부 점검 사항(수입식품 지도·점검)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1월)

수입식품등 지도 · 점검

☞ 특별점검 <지자체>

1)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자유업, 300제곱미터 미만) 안전관리 강화(p.323 참고)

- (상시점검) 전국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무신고 수입 가공품·축산물 판매 여부 점검(월2회 이상)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신규 업소 등에 대해서도 점검 등 리스트 반영 관리
 - ※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매월 4주 금요일까지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 보고
- (특별단속) 정부합동(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 등) 불법 수입식품 등 판매행위 집중단속 (필요시)
- (교육·홍보)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현수막 설치, 전광판 활용, 홍보 전단지 배포 등 (연중)

상시점검	특별단속(합동)	인터넷차단	계도·홍보(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점검(월 2회 이상, 지자체) ■ 담당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업체단속(수시) ■ 정부합동단속(필요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모니터 ■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단지 배포 ■ 기관장 현장시찰 ■ 홍보현수막 설치

수입식품등 지도 · 점검

2) 면세점 식품 등 안전관리(p.327 참고) <상반기 지자체 / 하반기 지방청>

- 면세점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은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내국인 출국 시 구매함에 따른 안전성 확보 필요
- **주요점검 내용** : 의약품 성분 및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허위과대 광고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계도 활동
- ★ **관리대상** : 한국면세점협회 등록된 57개 면세점(19년말 기준)

☞ 기타 사항

- 관내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자유업)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지자체)
- 면세점 지도점검 계획은 별도 시달 예정

수입 냉동전환 축산물 지도·점검

추진 배경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 허용에 따라 유통기한 연장 여부 등 확인점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 계획명 : 수입 냉동전환 축산물 지도·점검(p 318 참고) <지방청>

★ (협조사항) 지방청 별 점검 계획 수립 후 '수입유통안전과'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통합망 입력

※ 냉동전환 신청 수입업체 및 창고 중 냉동전환 실적 상위 업체 우선 선정

주요 점검사항

☑ 냉동전환 보고사항 일치 여부 (제품명, 중량, 보관방법, 냉동전환 시설·실시일·완료일 등)

☑ 유통기한 경과 후 냉동전환 보고 실시 여부

☑ 냉동전환 축산물에 표시 적정 여부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 입니다')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추진배경

안전사고 발생시 파급력이 큰 영·유아식 등 신속 회수를 위한 이력추적관리

* (의무등록 대상) 영·유아식, 조제유류, 건강기능식품

** 체중조절용, 특수의료용, 임신·수유부용 제품 단계적 적용('19.12월~'22.1월)

☑ 계획명 :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 관리 (p 329 참고) <지방청>

★ [협조사항] 지방청 별 자체 조사·평가 계획 수립 후 수입유통안전관리과 보고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절차

민원 접수 및 서류 검토

현지 확인 및 심사

판정 및 결재

등록증 발급
(이후 정기조사 평가)

※ 서류나 현지 확인 시 미흡하다고 판정된 경우 보완조치

수입식품 중 유통관리대상 식품 사후관리

유통관리

자사제품 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제품 사후관리 (지방청, 지자체)

*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관할관청 사후관리

유통관리대상 관리 프로세스

지방식약청장
유통관리 대상 통보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영업등록 관할 관청]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해당 지방청에
결과 통보

★ 외화 획득용 제품 사후관리 방법 개선(지방청)

→ 별도 제조·가공 없이 수입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되는 외화획득용제품(주로 수산물)의 경우 수출증빙서류(수출 면장 등)를 제출 받아 수입신고 용도 적합여부 확인 가능

* 다만,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현장 확인·점검 실시

★ 식품외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 한약재) 유통관리대상 제외 (다만, 모니터링 차원의 사후관리 실시)

해외 직구 식품 안전관리

추진배경

정식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국회지적 등)

→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표방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부정물질 함유여부 검사

* 부정물질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

☞ **계획명 :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등 안전관리 (p 334 참고) <평가원, 지방청센터>**

★ (협조사항) 검사 결과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식품 구매
(수입유통안전과)

위해우려 성분 검사
(지방식약청 및 평가원)

위해 우려 성분
검출 시

통관차단 (관세청) 및
사이트차단 요청(사이버조사단)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기관별 검사 건수(단위 : 건)

검사기관	계	평가원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계	1,500	270	210	220	230	190	190	190
우피유래	200	80	20	20	20	20	20	20
성기능, 다이어트 표방제품	1,200	150	180	190	200	160	160	160
구매대행*	100	40	10	10	10	10	10	10

* 인터넷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구매 검사

후대반입품 안전관리

추진 배경

보따리상 개인후대반입품 안전관리 (주2회 구매·검사)

→ 총 1,300건 : 인천항(450건), 평택항(450건), 군산항(350건), 부산항(50건)

☞ 계획명 :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안전관리 (p.336 참고) <지방청>

- 검사대상 : 휴대반입 농산물(대두, 울무, 참깨 등), 가공식품(참기름 등)
- 품목 선정 방법 : 세관 협조를 얻어 구매대상 물품 선정
- 검사항목 : 농산물(잔류농약), 가공식품(참기름 기준·규격, 유사유형 검사항목 적용)
- 부적합 시 조치 : 동일제품의 동일 포장회사 제품 3개월 간 반입 금지

☞ 반입금지 이후(3개월 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재검사(지방청)를 통해 적합 시에만 반입가능

★ 수거·검사 결과는 확인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지방청)

GMO 농산물 · 식품 및 LMO 안전관리

추진 배경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GMO 표시적정여부 점검 및 수거·검사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계획명 : 유전자변형 식품(GMO) 안전관리 (p. 353 참고) <지방청, 지자체>**

- 농산물 및 가공식품 GMO 표시 적정여부 조사 (총 6,000건 = 농산물 3,000건 + 가공식품 3,000건)

★ (협조사항) 매 분기별 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실적 송부(수입유통안전과)

지방청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조사 및 수거 검사

- 수행부서 : 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 농산물 조사 건수 : 3,000건
- 가공식품 조사 건수 : 440건

지자체

☑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조사 및 수거 검사

- 수행부서 : 시·도, 시·군·구,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 건수 : 2,560건

☑ **계획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p. 363 참고) <지방청 수입관리과>**

- 식품용 LMO 취급업체(20개소)에 대한 수입, 하역, 운반 등 취급보관에 대한 안전관리(매 수입시)

GMO 농산물 · 식품 등 안전관리

지 방 청(농산물)

지방식약청	건수
서울지방청	600
부산지방청	600
경인지방청	600
대구지방청	300
광주지방청	600
대전지방청	300

지 자 체 (가공식품)

지자체	건수	지자체	건수
계	2,560	경기	300
서울	200	강원	180
부산	160	충북	180
대구	120	충남	200
인천	120	전북	180
광주	80	전남	200
대전	80	경북	200
울산	60	경남	200
세종	40	제주	60

GMO 농산물 · 식품 등 안전관리

☑ '2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농산물 >

일자	제품정보			생산자정보		판매자 정보		수거검사 결과				
	품목	제품명	원산지	업소명	주소	업소명	판매자	수거 여부	간이 검사	정성 검사	정량 검사	검출값
'20.2.5.	대두	서리태	국산				대형마트	0	0	0	0	0.2

< 가공식품 >

일자	제품정보			제조회사정보		판매자 (조사장소)		수거검사 결과 (*수거건수와 검사건수 동일)				
	제품명	식품 유형	원료 원산지	업소명	주소	업소명	판매자 구분	총 검사 건수	간이 검사	정성 검사	정량 검사 (원료)	검출값
'20.2.5.	두유	두유류	국산				대형마트	1	0	0	0	0.2

※ 정확한 양식은 공문에 첨부하여 송부 예정



IX

건강기능식품 관리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한규홍 연구관

건강기능식품 관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체계도

구분	식약처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조·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총괄 ○의약품제조시설 이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제조시설 이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심사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등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관리 ○인터넷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점검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점검 ○수거·검사

건강기능식품 관리

지도 · 점검

관리대상	주관	추진방법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제조업	식약처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영업자 선정 및 관리 ○연 1회 이상(GMP 제외) 정기 점검 ○자가품질검사 직접 수행하는 업체 일제 점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판매업소(슈퍼, 자동판매기 등) 집중 점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집중 관리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이수 여부 점검

수거 · 검사

시도별	수거·검사 건수	시도별	수거·검사 건수	시도별	수거·검사 건수
계	2,200	서울	230	부산	150
인천	140	대구	140	광주	125
대전	115	울산	95	경기	230
강원	130	충북	140	충남	140
전북	115	전남	115	경북	115
경남	115	제주	60	세종	45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관별 중점 검사유형 및 검사항목(2019~2021년)

검사기관	기능성 원료명(고시형)
서울, 강원	EPA 및 DHA 함유 유지, 바나바잎추출물, 테아닌, 홍경천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부산, 울산 경남	프로바이오틱스, 공액리놀레산, 알로에전잎, N-아세틸글루코사민, 스쿠알렌, 헤마토코쿠스추출물
경기 인천	프로폴리스추출물, 글루코사민, 밀크씨슬추출물, 루테인, 엠에스엠, 코엔자임 Q10,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대구 경북	차전자피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폴리덱스트로스, 귀리식이섬유, 녹차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홍삼, 인삼,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알로에겔, 히알루론산, 레시틴, 대두이소플라본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엽록소 함유 식물,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홍국, 은행잎추출물

건강기능식품 관리

영업자(판매업, 제조업) 교육

업종별 교육시간	제조업 8시간, 판매업(유통전문 4시간, 일반판매 2시간)
교육내용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판매업 보수교육	보수교육 신설('16.2.3), 시행('17.4.7) 2시간 교육
교육기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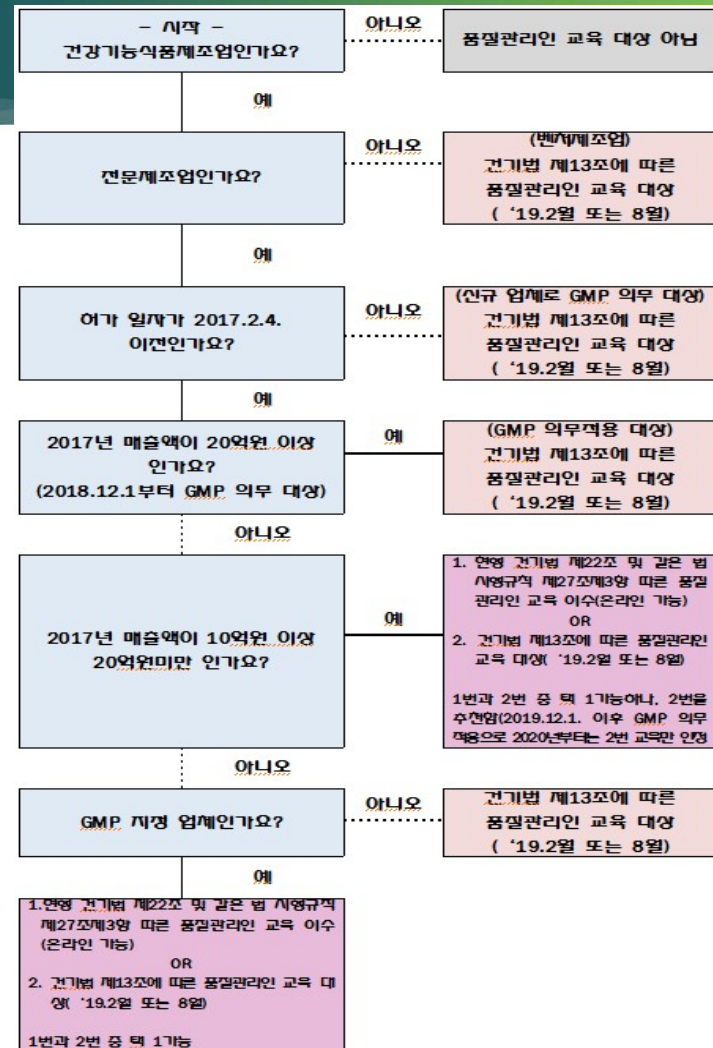
구분	신규	보수
교육시간	6시간 이내	
교육주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내용	품질관리인 직무 수행 필요 사항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자가품질검사를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 훈련	
교육면제	선임일 이전 1년 이내에 신규(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선임일 이전 2년 이내에 GMP 신규(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기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관리

GMP 의무화에 따른 교육대상 확인

☑ 벤처제조업 : 건기법 제13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 대상

☑ 전문제조업 : GMP 의무대상 업체에 따라 구분됨



건강기능식품 관리

교육 미이수자별 과태료 부과금액

근거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3조제1항 본문	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0만원 30만원
법 제13조제1항 단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법 제13조제2항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0만원
법 제13조제3항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	50만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이상사례 발생 보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4]영업자의 준수사항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개정)

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설)

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생략)---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8]영업자의 준수사항

1. 식품등 수입판매업(신설)

너.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생략)---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8]영업자의 준수사항

※ 위반시 과태료

-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을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유통전문판매업자가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을 접수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만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관리

▶ 기관별 업무 내용

기관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련법령,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조정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도관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 관리

▶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시점

1) GMP 지정 의무적용 시점(2017.2.3.이전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를 득한 업소)

가)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나)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다)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2) 2017. 2. 4.이후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를 득한 업소는 의무적용 대상

▶ GMP적용업체 조사·평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신규허가를 신청 시 GMP 지정평가를 실시하고, GMP 적용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에 대하여 GMP적용실시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실시

건강기능식품 관리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관리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권고 대상인 경우)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4항	시 정
2.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법 제22조제4항	지정취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4항	시 정
4. 위의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계속해서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4항	지정취소

※ GMP 지정업소 중 '17년 매출액 기준에 따른 GMP 의무 적용 업체는 시행일 전까지 적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행정처분기준(의무 대상인 경우)

위반사항	1차	2차	3차
11의3.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중 제조시설 기준 위반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조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조시설이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개월
2) 그 밖에 제조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중 기준서 등 위반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개월
2)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지시기록서 및 시험지시기록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5일
다.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 2017.2.4. 이후 허가받은 영업자는 즉시 적용하고, 기존영업자 중 '17년 매출액 기준에 따른 GMP 의무적용 대상업체는 시행일에 따른 순차 적용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9.1.15)

- ☞ 영업허가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안제5조,제6조,제7조,제12조)
 - 인허가 예측가능성 및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과 절차의 신속성 확보
-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안 제32조)
 - 현재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근거 마련
- ☞ 시행령에 있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27조)
 -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9.12.3.)

-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조사·분석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제10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19.7.9)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제19조의2 신설)

-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일부 위임(제20조제1항제9호 신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위임 근거 규정 마련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개선(별표 2 개정)

-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만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19.7.16)

☑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9 개정)

- 영업자 등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영업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영업자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시설기준 강화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인정기준 개선(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9조제4항 개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새로 하는 경우 등에는 신규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제29조의2제2항 개정)

-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19.12.26)

☑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 영업신고 간소화(제5조제1항 단서 신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한시적 영업신고 처리

☑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제22조제2항 개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별표1 개정)

-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내복용 제제만 한함)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생산실적을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제13조 개정)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제목을 '생산실적 보고서' 로 명확히 함



X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안전관리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관리
- ❖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9년도 법령 및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일(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15조제5항	‘19.1.15(‘19.2.16)	◦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
제25조	‘19.1.15(‘19.7.16)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인 인원 및 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제21조제2항	‘19.4.30(‘19.8.1)	◦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 [별표1]	‘19.11.12(‘19.11.12)	◦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병과류,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및 면류 등의 명칭 및 분류체계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공식품의 기준·규격에 맞게 정비
고시	‘19.3.22(‘19.3.22)	◦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19.11.28(‘19.11.28)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조정,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 정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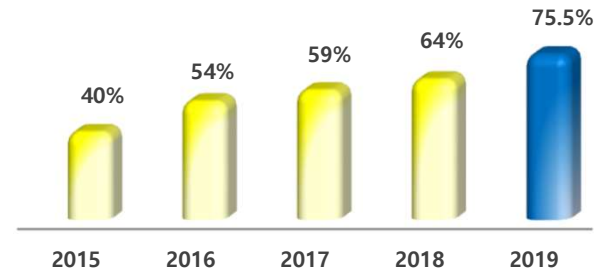
-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 제공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 기여

추진 목표

-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년) 0.05% → ('16년) 0.04% → ('17) 0.03% → ('18) 0.02% → ('19.9) 0.0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확대
* ('15년) 40% → ('16년) 54% → ('17년) 59% → ('18년) 64% → ('19년) 75.5%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반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지원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학교주변 안전관리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 (학교주변) 학교와 해당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 전담관리원을 통해 표지판의 설치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교체

- (학원가 등)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및 놀이공원 주변

- '16년 : 시·도별 1개 이상 → '17년 부터 : 시·군·구별 1개 이상

- * (학원가) 초·중·고등학생 학원 5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개 이상 구역

- (단, 군단위는 학원 2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개 이상)

- (놀이공원) 종합유원시설업이면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개 이상 구역

-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배치

- 지도·점검 :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따른 방학기간(동계 1월, 하계 8월) 중점 실시

- * 학원가 미지정 시·군·구는 관내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 10개소 이상 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학교주변 안전관리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 **학교주변 위생취약분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집중관리**
 - 분식점, 문방구, 학교매점 등 위생취약분야 : 월 1회 이상
 - *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어린이 이용률이 낮고 위반실적이 없는 업소 : 격월 1회 이상
- **봄, 가을 개학(3, 8월) 및 어린이날(4월) 대비 특별점검**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점검(10월)**
 -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시행('17.5.30)
- **학교주변 분식점 등 조리업소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 캠페인 추진**
 - * 식품진흥기금 등을 이용하여 위생마스크, 앞치마, 위생모 등 홍보물 제작·배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수거·검사

- 목적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수거·검사 실시로 품질관리 강화
- 수거검사 기관 : 지방식약청
- 검사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 * 영양에 관한 기준(열량, 포화지방, 당류, 강화영양소 2종)
 - *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타르색소, 보존료)
- 검사시기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공문 별도시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4.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등 관리

- **학교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목록(매월)**

-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요령**

- 식품안전나라 > 건강 · 영양 > 어린이 · 청소년 식생활안전관리 >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별프로그램

* 식품안전나라 : www.foodsafetykorea.go.kr

※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18.3.13)**

-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18.9.14)

구분	판매금지 대상 식품
학교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식품 전체
우수판매업소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 참고사항 1 : 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g)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유형		1회 섭취참고량	식품유형		1회 섭취참고량
과자	팝콘/강냉이	20*	빙과류	빙과	100
	그 외	30		아이스크림	100
캔디류	양갱	50	과채주스/과채음료 탄산음료/혼합음료		200
	푸딩	100	유산균음료		100
	그 외	10	김밥		1식
면류(용기면)		80	햄버거/샌드위치		150
빵류	피자	150	가공유/저지방가공유 무지방가공유/유음료		200ml
	그 외	70			
초콜릿류	초콜릿 가공품	30	농후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액상 150ml 호상 100g/ml
	초콜릿	15*	발효유		80ml/g
어육소시지		30	아이스크림		100ml

*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초콜릿, 과자 중 강냉이, 팝콘)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5.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광고제한·금지

- 오후5시부터 오후7시까지 TV광고 및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TV프로그램 중간광고
- 방송(TV,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6.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 정서저해 해당 식품 모양·형태
 - ✓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 (성적호기심 유발)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 남녀 애정 행위 모양 식품
 - ✓ (혐오감 유발) 사람의 형태, 신체 특정부위 모양 식품
 - ✓ (사행심 조장)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정서저해 해당 용기·포장
 - ✓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 사용하거나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 사용
 - ✓ (성적호기심 유발) 남녀 애정 행위 도안 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감독·지도(지방식약청, 지자체, 연 1회 이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25개소('19. 누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식약처(지방식약청), 연 1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지도·점검(지방식약청, 지자체, 연 2회)

8.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지방청, 지자체)

-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 교구 등 지원을 통한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관 등 현장 체험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홍보 강화
- 시·군·구, 지방청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이해' (3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담당 40명)



XI

농산물 안전관리

농축수산물안전과 남궁종환 사무관

농산물 안전관련 주요 언론보도와 부적합 농산물 폐기 현황

농산물 관련 주요 언론 보도



정치 > 국회·정당

'농약 범벅' 농산물 그대로 유통..."기준치 700배 넘는 깎아도"

[국감브리핑] "잔류농약 부적합 4년간 529건...수가-폐기 안돼" 기동민 "살충제 성분 셀러리도 폐기 안 돼...사전차단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성준 기자 | 2018-10-25 07:00 송고

2019. 10. 25.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렇게 버섯이 불법 영업을...온라인물 과일 중량에 박스 포함 15개 온라인물 중 GS샵만 '법대로' 영업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최근 유명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사과와 무게가 표기된 것과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는 "4kg을 내걸고 판매한 사과 한 박스의 실중량은 3.012kg 이었다. 박스 무게만 약 1kg이다. 내용물의 무게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1만1900원으로 kg당 계산했을 때 박 씨는 약 2900원만큼의 손실을 봤다.

온라인몰에서 과일 포장재를 중량에 포함 시키는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

최근 4년간 우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잔류농약 합 판정을 받고도 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유통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과한 농약이 검출된 국내산 농산물은 총 2183건이다.

부적합 농산물 폐기현황

('18년 국내 농산물)

구분	전체	유통 검사	경매 전 검사*
부적합 건수 (A)	489	199	290
폐기 건수 (B)	349	90	259
건수기준 폐기율 (B/A, %)	71.3	45.2	89.3
폐기량 (Kg, %)	41,264 (100.0)	7,347 (17.8)	33,917 (82.2)

*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실적

신선도 유지 및 유통·소비 시간이 짧은 농산물 특성상
부적합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및 조치가 중요

농산물 안전관리 주요 추진 방향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농산물 안전관리 방안 개선

- 월별 부적합률 상위 10개 품목 지침 반영
- 인구수, 유통물량 등을 고려한 수거·검사 실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농산물
안전망
확대

유통 시작단계 안전망 확대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 (19) 24개소, 95.8% → (20) 26개소, 97.2%
- 민간 유통업체 판매 전 농산물 검사 지원

- 온라인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
- 쇼핑몰의 자율 안전 유통 체계 구축 지원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

사각지대
농산물
안전관리

- 단순처리농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및
취약 업체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소비패턴을 반영한 사각지대 농산물 안전관리

안전망 확대 및 취약분야 집중 관리를 통한 부적합품 차단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농식품부 위탁)

안전성 조사 개요

수행 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도(농산물 품질관리법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등)

법적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8조

대상 지역

농산물의 생산 장소(저장 장소 포함)
유통 판매단계 일부(RPC, 산지유통시설, 전통시장 등)

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 유통, 판매단계 일부

-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능, 병원성미생물, 이산화황, 항생제, 유기오염물질

☑ 재배환경 관리

- 농지(배지포함), 농업용수
- 잔류농약, 중금속, 유기오염물질, 식중독균 등

☑ 지도·점검

- 미곡처리장, 대규모 집하장 등 농산물 생산시설
- 농약사용실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등

☑ 유해물질 잔류조사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개정 예정(1월 중)

- 생산단계(농식품부), 유통단계(식약처) 추진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개요

수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식약청), 시·도(식품위생법 담당부서)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 제7조(기준 및 규격), 제95조(벌칙)

대상 지역

백화점·대형할인 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농산물 도매시장 등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

☑ 수거·검사, 지도·점검

- (수행기관)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 (주요 점검사항) 점검유형별 착안사항 ‘식품안전관리지침’ 참조

☑ 단순처리농산물 생산업체 위생 안전관리 컨설팅

- (수행기관) 지방식약청
- (주요내용) 작업중 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방안 제시
- (대상)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꽃감, 절임배추, 깐마늘, 깐양파 등 생산 업체 20개소

☑ 당부사항

- 모든 **검사·점검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당일 입력** 원칙
- 특히, **품목유형, 수거세부장소**, 경매 전 검사여부 등 수거·검사 세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수거 · 검사)

☞ 일반 수거·검사 지방 식약청 및 지자체에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시행

* 일상검사, 공영도매시장 유통농산물 검사, 온라인 판매농산물 검사

☞ 기획 수거·검사 본부(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위해정보, 유통동향 등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및 검사 지시

*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식약공용 농·임산물 검사, 학교급식 납품업체 농산물 검사, 테마별 농산물 검사, 곰팡이독소 검사 등

2019 년도

1. 봄나물 수거·검사(지방청, 지자체)
2. 부적합 빈발 농산물 수거·검사(지자체, 5일)
3. 단성분 농약 검사(지자체)
4. 지역특화 농산물 합동 안전관리(지방청)
5. 온라인 농산물 수거·검사(180건)
6. 설·추석명절, 친환경인증 농산물 수거·검사 등



2020 년도

1. 봄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지자체)
2. 데이터 기반 농산물 수거·검사(지자체, 6~8월)
3. 단성분 농약 검사(지방청, 지자체)
4. 지역특화 농산물 안전관리 삭제
5. 온라인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300~330건)
6. 그 외 동일

유통단계(현장검사소 포함):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 및 검사의뢰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수거 · 검사)

위해 정보 분석을 통한 농산물 안전사고 예방

-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공유(매월/ 지방청, 지자체, 농식품부, 주요 유통업체 등)
-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중점 관리(원인 분석 및 기관별 신속 대응)
 - (지방청, 지자체)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등 수거·검사 강화
 - (농식품부) 해당 품목 생산 농가 대상 지도·교육 및 안전성 조사 강화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집중관리

2019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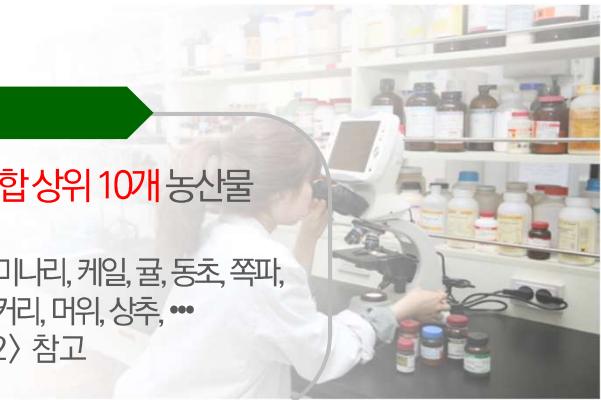
국민 다소비 농산물 및 부적합률 높은 농산물 15품목

* 고춧잎, 곰취, 당귀잎, 머위, 무잎(무청), 방풍나물, 비름나물, 셀러리, 썩갓, 쪽파, 참나물, 참다래(키위), 총각무(알타리무), 취나물, 케일

2020 년도

데이터 분석 결과 월별 부적합 상위 10개 농산물

* (1월)머위, 깻잎, 썩갓, 참다래, 미나리, 케일, 굴, 동초, 쪽파, 봄동, (2월)썩갓, 근대, 고추, 차커리, 머위, 상추, ...
* 식품안전관리 지침 <붙임2> 참고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관리(지도·점검)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지도 점검

- ☑ 대상 : 세척, 건조, 절단 등 단순 처리 업체
- ☑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일상점검(시·도)

각 기관별 관내 농산물 단순처리업체 현황을 조사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연중 지도·점검

기획 점검(계획 별도 시행)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3월, 11월)
(상반기) 깎 양파, 깎 마늘 등 상시 출하 품목
(하반기) 절임배추, 꽃감 등 계절 다소비 품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연2회→1회)

- ☑ 대상 : 전국 약령시장 등의 약초상, 식품판매업 및 한약재 도매상
- ☑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일상점검(시·도)

각 기관별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연중 지도·점검

기획 점검(계획 별도 시행)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4월)

교육·홍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 근절

농산물 안전관리 연간 일정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관
1	설 명절 성수 농산물 수거·검사	1.8~14 (5일)	지방청 / 지자체
2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수거·검사	3.2~6 (5일)	지자체
3	봄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3.9~13 (5일)	지자체
4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3.23~27 (5일)	지방청 / 지자체
5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등 지도·점검 및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	4.27~5.1 (5일)	지방청 / 지자체
6	친환경 인증 농산물 수거·검사	5.4~8 (5일)	지방청
7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취약 농산물 수거·검사	6월~8월	지자체
8	농산물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6월~9월	지방청
9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수거·검사	8.31~9.4 (5일)	지자체
10	추석 명절 성수 농산물 수거·검사	9.14~22 (7일)	지방청 / 지자체
11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	9.21~23 (3일)	지자체
12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11.16~20 (5일)	지자체
13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11.23~27 (5일)	지방청 / 지자체



XI 축산물 안전관리

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19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18.12.11 개정('19.6.12 시행)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법적 성격(자문위원회) 명확화
- 도축검사원 의무 배치 명확화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 법률 상향 입법화
- 영업 허가 및 신고 간주(看做)제 도입
 - * 영업 허가(신고) 민원 처리기한 동안 허가(수리)여부 또는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등
- 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등

'19.4.30 개정('19.11.1 시행)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명
- 책임수의사 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19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9.6.4 개정('19.6.12 시행)

- 도축검사원 채용·배치 예외 작업장 명확화
 - * “도서·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도 본도 제외)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
-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 예외 인정 확대
 - *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주문받아 축산물 판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 판매 중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포장 달걀 판매 중개하는 경우
- 축산물 이물 발견 보고자 및 이물관리 권한 위임근거 마련
 - *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9.10.22 개정('19.11.1 시행)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상향 됨에 따라, 시행령 중 기존 규정 삭제

'19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9.6.25 개정('19.6.25 시행)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준수사항, 지정취소기준 등 규정 마련
- 영업자의 이물보고 대상,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 *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경고) 게시일로부터 5일
(시설개선 명령)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완료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19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9.9.4 개정('20.1.1 시행)

- 축산물가공업 자가품질검사 효율화
 - *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검사대상을 선정하되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축산물 이물보고 의무화 세부사항 마련
 - * 보고대상 이물과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이물범위,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및
영업자가 이물 발견보고를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보고한 경우 이물혼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 마련
- 도축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가축만 도축하도록 강화
 - *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 도살·처리 금지하도록 준수사항 마련
-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전자 파일로 휴대 허용

'19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월 예정(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위생안전 관련 요건 충족 시 점포 외 장소 진열
 - *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포 외 영업장소에서도 식육·포장육 등을 진열할 수 있도록 허용
(위생안전 요건) 냉장·냉동 보존 가능하고 소비자가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진열시설 구비, 비·눈·먼지·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구조 등
-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완화
 - * 상하차대 이외에 축산물의 상·하차를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도 포함
- 식육판매업 영업장과 분리(벽)·구획(커튼)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백화점, 마트 외에 '쇼핑센터' 추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포장된 닭·오리의 식육을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 허용

'19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고시 주요 개정내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 품질 관련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19.9.16)
 - * 당분, 유지방, 유성분, 조지방, 조단백질, 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 유당, 아미노산질소, 유산균수, 효모수
-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명확화('19.12월 예정)
 - * 연간 유형별 검사품목 수의 기준이 되는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동일 유형의 품목 수'로 함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생산단계 식용란 미생물 검사항목 확대('19.9.6)
 - * (현행) 살모넬라 1종(엔테라이티디스) → (개정) 살모넬라 3종(엔테라이티디스, 티피무리움, 톰슨)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제정)

- 국가 주도의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도입·운영('19.12.16 제정, 시행 '20.7.1)
 - * 정부(농식품부)가 매년 검사 계획 수립, 지자체 검사하는 체계 구축

축산물 위생감시 주요 추진 방향

관련 법령 준수 철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교육 미실시 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 * 미표시 제품 보관·판매 등

안전관리
기본사항
준수 철저

사각지대
축산물
관리

관리 사각지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소비패턴, 사회변화상 등 반영
 - * 온라인 거래 축산물, 가정간편식, 식육부산물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 위생취약 분야 안전관리 강화
 - * 목장형 유가공, 식용란수집판매업, 위해우려 축산물(액란제품, 분쇄가공육제품 등) 안전관리

-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안전사고 예방
 -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소요 자금 지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

지도 교육
및
홍보강화

- 축산물위생감시원 대상 교육 내실화
- 대국민 대상 안전한 소비 홍보 지속 실시
- 신규 영업자 지도·교육 강화(식용란선별포장업)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영업자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축산물 공급

축산물 위생감시 주요 추진 방향

공통

- ☑ 소비가 증가하는 온라인거래 축산물, 가정간편식(HMR), 식육부산물 등 안전관리 강화(연중)
- ☑ 식중독균 검출 및 멸균제품 세균발육 부적합 시 위생점검 강화(연중)
- ☑ 공휴일, 야간·새벽시간 등 단속 취약시기 특별점검(연중)
 - 도축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식육 취급·운반 등 점검

시기별

- ☑ 성수기(설, 추석) 대비 위생점검(1월, 9월)
 - 성수기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축산물 생산·유통 차단
-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6월)
 -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시기에 전국적인 일제점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축산물 공급

축산물 위생감시 주요 추진 방향

분야별

-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업체 및 직접 수행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점검(연중)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및 직접 실시 업체의 검사 실시 여부 등 집중 점검
- ☑ 식육추출가공품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 삼계탕, 육개장 등 제조시 미생물 관리, 살·멸균 공정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 원료육 및 완제품의 미생물 규격 등 안전관리 여부 집중 점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축산물 공급

축산물 위생감시 주요 추진 방향

분야별

☑ 목장형 유가공업체 점검

- 완제품의 미생물 규격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액란제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 원료 및 완제품의 미생물 규격 관리,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지도점검

-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용에 부적합한 알 보관·유통,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식육포장처리업체 지도점검

- 식육, 부산물 등에서 이상부위 발견 시 제거·폐기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집중 점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축산물 공급

2020년 축산물 위생감시 추진 일정

구분	감시활동	시기	비고
공 통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취약시기 특별 점검	년중	단속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국제 행사 등에 축산물을 생산·납품 영업소 점검	수요발생시	
	식중독균 부적합 영업장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연중	
시기별	성수기(설, 추석) 대비 위생점검	1월 / 9월	일제점검추진 (식약처)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6월	
분야별	식육추출가공품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2월 / 11월	지자체(지방청)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지도점검	3월	지자체
	목장형 유가공업체 지도점검	4월	지자체
	액란제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5월	지자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지도점검	7월	지자체(지방청)
	식육포장처리업체 지도점검	10월	지자체(지방청)
	냉장 축산물 냉동전환 보고이행사항 점검	수시	공통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력 업체 및 직접 수행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연중	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주요 추진 방향

기본 방향

☞ (기획 수거·검사) 본부(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언론동향,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및 검사 지시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동향, 국회 지적사항, 민원제보 등에 따른 검사 등

☞ (일반 수거·검사)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 수립·시행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축산물 공급

축산물 수거·검사 주요 추진 방향

'20년 추진 방향

- ☑ 유통 축산물(식육, 식용란, 축산물가공품 등) 수거·검사
 - 부적합 검출 또는 잔류위반 빈도가 높거나 위해도가 높은 물질 중심으로 검사 실시
- ☑ 조제유류 특별 수거검사 지속 실시
 - 국내 생산·판매하는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 ☑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거·검사
 - 가정간편식(HMR), 액란제품, 분쇄가공육제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 ☑ 식육, 식용란, 원유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잔류물질 및 미생물 모니터링, 규제검사 등 생산·유통단계 검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축산물 공급

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시 당부사항

당부 사항

- 지자체별 위생감사·수거검사 실적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철저**
 - 식육판매업 등 시·군·구 관할 영업장에 대한 점검실적 입력 독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따른 영업장 안전관리 철저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 제품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 실시 권장
 - 소비자 위해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에 따른 사회적 손실 최소화



XI 수산물 안전관리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서기관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추진 방향

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다빈도 처방 또는 부적합 이력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
 - ('19) 6.2% → ('20) 20%
- 양식장 합동 지도 점검

양식수산물
집중관리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

소비패턴을 반영한 온라인 판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판매 단순처리 수산물, 자연산 표방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수산물
위해요소
사전관리

사각지대
수산물
안전관리

- 계절별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 봄(패류독소), 여름(비브리오균), 겨울(노로바이러스) 등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 과메기, 김, 생굴 생산업체 대상 위생관리 컨설팅 실시

시기별 수산물 위해요소 선제적 안전관리

관리 사각지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유해 수산물 사전 차단 및 수산물 안전 확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해양수산부 위탁)

사업개요

수행 기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수산물 안전성조사 담당부서)

법적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67조

조사 대상 수산물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

조사 항목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생물독소, 잔류농약,
유기오염물질, 병원성미생물, 방사능 등

세부추진계획

☑ 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 양식수산물
- 어획수산물
-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

☑ 위해요소 모니터링

- 안전관리 사각지대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 이슈 수산물 등에 대한 조사

☑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 양식장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 환경 유래 오염물질 등의 안전관리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해양수산부 위탁)

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 양식 수산물

- 생산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양식장
-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미 실시 양식장 및 품목
- 최근 3년간 다생산·처방 동물용의약품 및 품목
- 최근 5년간 다빈도(2회 이상) 및 사용금지물질 부적합 품목 및 항목

☞ 어획 수산물

- (대상) 다생산·소비, 오염우려해역 생산, 국내외 위해정보 수산물
- (장소)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등
- (항목) 위해우려 항목

☞ 어장·용수·자재 등

-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어장·용수·자재
- *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마련 후 실시 ('20년 상반기 예정)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해양수산부 위탁)

위해요소 모니터링

☑ 안전관리 사각지대 수산물

- (대상) 훈회, 어획, 표류 고래고기
 - (장소) 경매 전 위판장
 - (항목) 납, 카드뮴, 메틸수은, PCBs
- * 고래고기 안전관리기준 적용

☑ 위해정보·사회적 이슈 수산물

- (대상) 기준 규격 미설정 또는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문제제기 위해요소
- (항목) 이슈가 되는 수산물 및 항목, 가열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해양수산부 위탁)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강화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점검 등

- (대상) 부적합 양식장 및 최근 3년간 점검 미 실시 양식장
- (내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등 오남용 또는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여부
- (조사기관) 해수부, 식약처, 지자체 합동

☑ 수산물 오염원 안전관리

- (대상) 공단, 제련소, 폐광산, 유류오염사고, 불법 약품 사용이나 폐기물 투기 등으로 오염 또는 오염우려 지역
- (항목) 위해우려항목

* '생산단계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마련 후 실시 ('20년 상반기 예정)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사업 개요

수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사업

법적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고시 제2019-105호)

조사
대상

다생산·다소비, 최근 3년간 다빈도 부적합 수산물
국내외 위해정보 및 문제제기 수산물
기 조사결과 조사 필요성이 있는 수산물

조사항목
건수

(항목)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건수) 600건

잔류조사 결과 조치

☑ 부적합 시 조치사항

- 기준 초과 수산물 수거지 관할 시·도(시·군·구) 위생부서에서 동일 수산물에 대한 확인검사(수거검사) 및 유통 경로 파악
-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기관별 조치사항

- (수거지 위생부서) 유통중인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폐기 해수부(수품원) 및 지자체 안전성부서에 안전성조사 요청
- (생산지 안전성부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이해관계인 교육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 개요

수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식약청),
시·도(식품위생법 담당부서)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
제7조(기준 및 규격), 제95조(벌칙)

대상 지역

위·공판장, 수산시장, 수산물 유통업체 등

세부추진계획

☑ 수거·검사

- (기획·검사) 소비패턴, 위해 정보 등을 분석하여 식약처에서 계획 수립·시행
- (일반 수거·검사) 관할지역 내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하여 지방식약청,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여 검사

☑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 수산물 위해요소 모니터링

- 국내외 위해정보, 사회적 문제 제기 또는 계절적 이슈 수산물

☑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컨설팅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기획 수거·검사

2019 년도

다소비 성수 및 계절별 위해요소 집중관리
냉동 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등 검사
위해 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2020 년도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지방청, 지자체)
온라인 판매 수산물 수거·검사(지방청, 지자체)
명절 성수 및 계절별 위해요소 집중관리
위해 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 냉동 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등 검사(기획 → 일반), 온라인판매 수산물 검사는(일반 → 기획) 전환 관리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기획 수거·검사

☑ 양식수산물

- (대상) 관할지역내 유통·판매 양식 수산물
- (시기) 5, 8, 10월
- (항목/건수) 동물용의약품 53종/2,000건

☑ 다소비 수산물

- 명절 성수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관리
- * 명절 성수(1,9월), 봄철 패류독소(3~6월), 여름철 비브리오균(5~10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11~2월)

☑ 온라인 판매 수산물

- (대상)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자연산 표방 수산물, 단순처리 수산물 등
- (시기) 3, 9월
- (항목/건수)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유해 미생물 등/400건

☑ 위해우려 수산물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제기 수산물(수시)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일반 수거·검사

☑ 일상 수거검사

- (대상) 위공판장,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관내 유통 수산물
- (시기) 월 1회
- (항목) 부적합 이력 항목,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 (기관) 시·도, 시·군·구

☑ 냉동 수산물 내용량 검사

- (대상) 포장된 냉동 수산물
- (시기) 분기별 1회
- (항목) 내용량, 얼음막
- (기관) 지방식약청

위해요소 모니터링

☑ 위해요소 모니터링

- (대상) 국내외 위해요소, 사회적 문제 제기 또는 계절별 이슈 수산물
- (항목) 금지물질, 중금속 등 문제제기 위해우려 항목
- (기관)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 일상 지도·점검

- (기관) 시·도(시·군·구)
- (대상)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활어패류 유통센터, 원양산 냉동수산물 보관창고, 수산물 운반업체 등
- (방법) 각 기관별 자체 세부추진 계획 수립하여 연중 점검

☑ 기획 지도·점검

- (대상) 과메기, 김, 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11월)
- (방법) 식약처에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위생관리 컨설팅

- (기관) 지방식약청
- (대상) 가열조리없이 바로 섭취하는 과메기, 마른김, 생굴 생산업체 30개소
- (방법) 각 기관별 자체 세부추진 계획 수립하여 연중 점검

☑ 수산물 생산 유통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대상)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자, 수산시장 및 위공판장 종사자 등
- (자율검사) 생산자 단체 자율검사 강화
- (기술지원) 자율검사 능력 제고를 위한 시험법 교육

수산물 안전관리 연간 일정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관
1	설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1.8~14	지자체
2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3~6월	지방청/수과원/지자체
3	온라인 판매 수산물 수거검사	3.30~4.3	지방청/지자체
4	봄철 다소비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5.11~15	지자체
5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여름철 어획수산물 안전관리	6~10월	지방청/수품원/지자체
6	여름철 다소비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8.17~21	지방청/지자체
7	온라인 판매 수산물 수거검사	9.7~11	지방청/지자체
8	추석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9.14~22	지방청/지자체
9	가을철 다소비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10.5~9	지방청
10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11~'21.2월	지방청/수품원, 수과원/지자체
11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11.23~27	지방청/지자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2019

검사
대상

다소비 식품
검출(미량 또는 부적합) 이력 식품

실적
보고

기관에서 수행한 모든 방사능 검사
연구사업 등 포함

2020

☑ 다소비 식품 위주로 검사

미량검출 단골품목보다는 **다양한 품목**을 검사

☑ 지자체별 연간 방사능 검사 계획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한 제품

연구사업은 실적보고에서 제외- **부적합시는 즉시 보고**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미량검출 시 조치 방법

☑ 식품공전에 따라 판정하여 **세슘이 1베크렐** 이상 검출된 경우, 평가원 및 지방청에 검체 의뢰

공문 기안

수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염물질과)

참조 : 관할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검체 송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염물질과) 및 관할 지방청

결과 발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염물질과)

검사기관	추가핵종분석 의뢰 기관
서울청, 해수부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상도	부산청
대전청, 농식품부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경인청
대구시, 경북도	대구청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광주청



감사합니다.

